

청소년비행 통제를 위한 소년경찰 대책

《研究陣》

연구위원	전대양(관동대 교수)
	장석현(한려대 교수)
연구지도위원	이상현(동국대 교수)
연구실장	이강수(총경)
연구관	장전배(경정)

목 차

I. 서 론	9
1. 연구의 목적	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가. 연구의 범위	11
나. 연구의 방법	12
II. 소년경찰의 환경분석	14
1. 범인성 유해환경	14
가. 학교주변 유해환경	14
나. 대중매체	17
2. 소년비행 동향	22
가. 비행소년의 동향	22
나. 촉법소년의 감소	27
다. 지위비행의 증가	28
라. 가출인의 증가 및 미아의 감소	29
III. 소년경찰의 비교검토	30
1. 일 본	30
가. 연 혁	30
나. 관련 조직 및 인력	33
다. 운 용	36
라. 예방 및 선도프로그램	44
마.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44
2. 미 국	45

가. 역사적 발전과정	45
나. 조직 및 인력	47
다. 운용	49
라. 예방 및 선도 프로그램	50
마.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52
IV. 우리나라 소년경찰의 실태분석	54
1. 조사방법	54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5
3. 우리나라 소년경찰의 실태분석	58
가. 조직	58
나. 인사행정	62
다. 운용	66
라. 비행 예방 및 선도 프로그램	73
마. 유관기관과의 협력정도	83
4. 요약 및 문제점	85
가. 조직	85
나. 인사행정	86
다. 운용	86
라. 비행예방 및 선도 프로그램	87
마.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88
V. 청소년비행 통제를 위한 소년경찰 대책	89
1. 경찰조직외부의 기반조성	89
가. 관련법규의 완화	89
나.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의 강화	91
2. 소년비행통제를 위한 소년경찰 대책	94
가 소년경찰 조직의 적정화	94

나. 소년경찰의 인사행정의 내실화	94
다. 소년경찰 운영의 합리화	96
라. 보호·선도프로그램의 강화	98
VI. 제언 및 결론	110
참고문헌	113
설문지	115

표 목 차

〈표 1〉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유해업소 정비실적(1994년)	15
〈표 2〉 학교주변유해업소 위반유형별 단속현황(1994년)	15
〈표 3〉 학교폭력 단속현황(1995.1.5-1996.4.15.)	16
〈표 4〉 청소년관련 방송내용 심사사유별 현황	18
〈표 5〉 영화의 공연추세	19
〈표 6〉 불법음반 및 비디오물 단속현황	20
〈표 7〉 도서심의 현황(1994년)	21
〈표 8〉 연도별 범죄소년의 발생현황	22
〈표 9〉 범죄소년의 범죄유형별 현황	23
〈표 10〉 범죄원인별 동향	24
〈표 11〉 범죄소년 학력별 동향	25
〈표 12〉 범죄소년 가족관계별 동향	26
〈표 13〉 범죄소년의 생활정도별 동향	27
〈표 14〉 촉법소년의 동향	28
〈표 15〉 불량행위소년의 동향	28
〈표 16〉 요보호소년의 발생동향	29
〈표 17〉 소년경찰관련조직	35
〈표 18〉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내용	42
〈표 19〉 조사대상	54
〈표 20〉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6
〈표 21〉 조직규모의 적절성 여부	58
〈표 22〉 조직규모의 개선방향	59
〈표 23〉 소년계의 명칭변경 동의여부	59
〈표 24〉 소년계의 변경명칭	60

〈표 25〉 수사반과 지도반 구분 여부	60
〈표 26〉 소년사건의 형사과(수사과)와 소년계의 업무분담	61
〈표 27〉 성폭력범죄의 상담 및 예방활동의 소년계 취급여부	62
〈표 28〉 직원수의 적정여부	63
〈표 29〉 소년경찰의 채용방식	63
〈표 30〉 소년경찰의 전문화과정 교육의 필요성	64
〈표 31〉 전문화과정의 교육기관	64
〈표 32〉 전문화과정의 교육내용	65
〈표 33〉 전문화과정의 교육기간	65
〈표 34〉 소년경찰 직무규칙의 개정 필요성	66
〈표 35〉 비행소년의 처리방법	66
〈표 36〉 비행소년의 상담방법	67
〈표 37〉 직접상담 대상소년	67
〈표 38〉 비행소년에 대한 직접상담내용	68
〈표 39〉 비행소년 보호자에 대한 상담내용	69
〈표 40〉 가두보호활동 빈도	69
〈표 41〉 유해업소의 단속내용	70
〈표 42〉 유해소업소의 적발시 입주에 대한조치	71
〈표 43〉 비행위험성 판정자료의 효과성	71
〈표 44〉 비행위험성 판정자료의 비효과성 이유	72
〈표 45〉 축범소년의 가정법원송치시 동행영장의 발부의 필요성	72
〈표 46〉 청소년지도위원의 효용성여부	73
〈표 47〉 청소년지도위원의 비효용성 이유	74
〈표 48〉 청소년지도위원의 연령 분포	74
〈표 49〉 청소년지도위원들의 직업	75
〈표 50〉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	75
〈표 51〉 청소년범죄예방교실의 소년비행예방효과	76
〈표 52〉 청소년범죄예방교실의 비효과성 이유	77

〈표 53〉 사랑의 교실의 효과성 여부	77
〈표 54〉 사랑의 교실의 비효과성 이유	78
〈표 55〉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의 필요성 여부	78
〈표 56〉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실시기관	79
〈표 57〉 사회봉사프로그램의 대상소년	79
〈표 58〉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의 불필요성 이유	80
〈표 59〉 청소년통행금지제도의 효용성여부	80
〈표 60〉 비행소년 보호자에 대한 교육방식의 개선필요성	81
〈표 61〉 중퇴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 여부	82
〈표 62〉 조직범죄집단가입방지를 위한 관리정도	82
〈표 63〉 보호자에 대한 처벌인정여부	83
〈표 64〉 보호자 처벌의 종류	83
〈표 65〉 유관기관과의 협력정도	84
〈표 66〉 소년경찰 전문화과정 교육체계(안)	95
〈표 67〉 비행소년선도 보호프로그램의 운영의 이원화 체계(안)	99
〈표 68〉 유해환경정화를 위한 규제	102
〈표 69〉 청소년 자신에 대한 유해행위의 규제	103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청소년비행은 오래전부터 세계각국의 공통적인 관심사로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나 아직도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공식통계에 의하면 전체범죄 중 청소년비행이 1970년 23.0%, 1980년 10.0%, 1990년 7.0%, 1994년 7.4%의 추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질적으로는 소년특별법범의 증가, 동기없는 범죄 및 이육범죄의 증가, 조폭화 및 절도범죄의 증가, 중학교 중퇴생 및 고등학교 재학생 범죄의 증가, 지위비행의 증가 등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청소년비행의 선도대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청소년비행의 현저한 질적 특징은 학교주변 폭력, 동기없는 범죄, 이지메현상 등의 증가현상을 나타내어 정부는 학교주변폭력의 예방적 차원에서 강력한 청소년선도대책을 추진하기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청소년비행을 통제하기 위하여는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원인을 진단하지 않고서는 청소년비행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비행의 원인은 생물학적 요인, 심리학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청소년비행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환경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환경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 보호관찰소 등 공식적 통제기관과 가정, 학교, 지역사회, 청소년단체 등 비공식적 통제기관이 청소년비행 통제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형성하여야 한다. 공식적 통제기관이 비행소년을 처벌하고 낙인화하는 기능을 담당한다면 비공식적 통제기관은 청소년비행을 예방하거나 비행자로 낙인찍힌 비행소년을 선도·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공식적 통제기관 중 경찰은 최일선에서 청소년을 비행자로 낙인찍고 처벌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비행청소년의 낙인화를 방지하고 선

도·보호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지만 낙인화 및 처벌 위주로 청소년 비행문제를 접근하기 보다는 선도·보호하는 차원에서 청소년비행문제를 접근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비행소년으로 한번 낙인찍히게 되면 청소년의 심리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므로 최근에는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는 비형벌화(Depenalization), 범죄자를 교정시설 등 일정한 시설에 수용하지 않는 비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정규의 재판절차를 회피하고 지역사회로의 선도, 교육, 상담기관에 위탁하는 전환제도(Diversion) 등이 비행청소년의 낙인화 및 재범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은 소년비행자의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범죄예방에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형사사법기관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시켜 주는 동시에 막대한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사회통제를 회피함으로써 인도적인 소년사법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미국의 경우 지위비행자나 가벼운 비행사건을 소년법원에 송치하여 처벌하는 대신 경찰이 청소년봉사국(Youth Service Bureau)으로 보내어 부모 및 학교와의 협력하에 상담·치료 등 개선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은 청소년을 선도하고 육성하는 기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각 중앙부서에 산재하여 있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선도 및 보도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의 선도와 비행예방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경찰은 법집행을 통한 강제작용으로서 비행소년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선도하고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소년경찰은 소년을 과학적으로 보도하고 유해환경을 정화하며 비행을 방지하고 비행소년을 합리적으로 처우함으로써 소년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선도활동을 하고 있으나 소년비행이 지속적으로 사회문제화되는 현상은 소년경찰이 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과 미국의 소년경찰활동을 조직과 인력, 운용, 소년비행

의 예방 및 선도프로그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비교·검토하여 양국 고유의 독특한 소년경찰제도를 소개한 후 우리나라 소년경찰활동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청소년비행통제를 위한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소년경찰 대책을 제시한 후 몇가지 제언을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의 범위

1) 인적 범위

소년비행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년법상에는 비행소년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범위를 넓혀서 소년경찰 직무규칙(경찰예규 제101호, 1995. 6. 22.)에 따라 소년경찰이 직접 다루는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등 비행소년과 미성년자보호법상의 불량행위소년 및 아동복지법상의 요보호소년을 포함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2) 활동상의 범위

경찰은 형사사법기관 중에서 최일선에서 비행소년을 발견하여 과학적으로 보도하고 비행소년을 합리적으로 처우하며 비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소년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경찰은 경찰법 제3조(경찰의 임무)에서 규정한 「범죄의 예방」이라는 규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의 규정에 의거 각종의 소년경찰활동을 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년경찰의 개념은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된다. 협의의 개념은 소년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경찰조직을 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조직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광의의 개념은 소년경찰의 인력 및 조직 뿐만 아니라 소년의 건전한 지도육성을 위하여 비행소년의 합리적인 처우를 목적으로 하는 사범경찰활동, 유해환경정화 등 소년보호를 목적으로

로 하는 행정경찰활동, 미성년자보호법과 아동복지법 등에 근거하여 소년의 복지를 해하는 성인범죄를 다루는 복지범죄의 단속까지 포함하는 일체의 경찰활동을 포함하여 지칭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도 광의의 개념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3) 비공식적 통제기관과의 관계상의 범위

청소년비행을 통제하는 데는 소년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 청소년단체, 청소년직장과 같은 비공식적 통제기관이 이러한 청소년비행의 통제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공식적 통제기관들과 소년경찰과의 협력체제 구축은 청소년비행 통제를 위해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비공식적 통제기관도 소년경찰과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켜 논의하고자 한다.

나. 연구의 방법

위와 같은 연구의 범위를 전제로 하여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찰청 및 정부의 관련부처에서 발간하는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소년비행을 조장하는 유해환경과 소년비행의 동향을 개관하여 소년경찰활동의 환경을 분석하였다. 특히 소년비행의 양적 증가현상 보다는 질적 특성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것은 그 동안 소년비행이 통계상으로는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원인이 소년비행의 질적 특성의 악화와 경미한 지위비행의 증가(소년범죄의 3배이상)에 있기 때문이다.

2) 청소년비행통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소년경찰의 조직과 인력, 운용, 보호프로그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비교·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소년경찰제도의 운용에 시사점을 얻으려고 노력하였다.

3) 소년비행이 비교적 많이 발생하고 소년경찰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전국 3

개 경찰서의 소년계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소년경찰활동의 현황과 실태를 심층 면접하였다.

4) 소년경찰 2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소년경찰의 조직, 인사, 운용, 보호프로그램,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소년경찰활동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4)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년경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조직, 인사, 운용, 보호프로그램, 유관기관과의 관계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5) 마지막으로 결론을 유도하고 몇가지 제언을 하면서 본 연구를 마치고자 한다.

II. 소년경찰의 환경분석

1. 범인성 유해환경

가. 학교주변 유해환경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은 건전한 청소년교육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학교주변의 비교육적인 유해환경을 정화하여 학습분위기 조성 및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교보건법상에는 절대위생정화구역과 상대위생정화구역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이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¹⁾ 학교보건법 제6조는 이러한 정화구역내에서도 금지행위 및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²⁾

그러나 금지행위 및 시설도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나 학교정화구역내 이전이나 폐쇄대상업소가 상당수 잔존하고 있고 업주는 사유재산보호 등의 이유로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 1) 이러한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은 교육장이 설정하지만 건축허가, 영업허가, 유해시설 철거 명령은 시, 군, 구청장의 소관사항이므로 허가후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 2) 학교보건법 제6조는 ㉠ 환경보전법에 정한 오염물질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극장, 총포, 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압축가스, 액화 가스의 제조장 및 저장소 ㉢ 도축장, 화장장 ㉣ 오물수집장소 ㉤ 오물매립장, 오물건개소 ㉥ 각장, 쓰레기 중발처리시설 및 분뇨중발처리시설 ㉦ 폐사수처리장, 화계장 ㉧ 전염병원, 전염병 격리병사, 격리소 ㉨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 가족세탁 ㉪ 전문음식점, 각종 유흥음식점, 간이주점 ㉫ 호텔, 여관, 여인숙 ㉬ 농중독육탕 중 휴식시설 ㉭ 사행행위장, 당구장, 경마장 ㉮)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을 말한다.

이러한 정화구역내에 설치되어 있는 호텔, 여관, 유흥음식점, 전자유기장 등 유해업소는 일정범위내에서 설치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하급수적으로 난립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비행 및 탈선을 조장하고 있다. 1994년 현재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에 설치되어 있는 유해업소는 4,481개소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에서 670개소가 정비되었다.

<표 1>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유해업소 정비실적(1994년) (단위:개소)

업종	전자유기장	여관,여인숙	유흥음식점	만화가게	오물수집상	탕구장	기타	계
업소수	394	28	8	222	12	1	5	670

자료 : 체육청소년부, 청소년백서, 1995.

또한 이러한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위반유형을 보면 1994년의 경우 퇴폐변태 5,455명, 무허가 8,900명, 영업시간 위반행위 11,850명, 청소년출입목인이 3,988명, 술·담배 제공행위 등 기타가 17,411명 등 모두 47,604명을 적발하여 구속 401명, 불구속 32,392명, 즉심 4,800명, 훈방 10,011명으로 각각 조치하였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2,707명이 감소한 것인데 그 원인은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경찰과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단속과 업주측의 자율정화 의지의 확산, 그리고 시민들의 고발 및 신고정신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2> 학교주변유해업소 위반유형별 단속현황(1994년) (단위:명)

구분	계	위 반					조 치 별				행정 처분
		퇴폐 변태	무허가	영업 시간 행위	청소년 출입 목인	기타	구속	불구속	즉심	훈방	
1992	28,346	2,475	6,247	6,684	2,433	10,507	673	18,455	2,191	7,027	18,729
1993	60,311	3,910	14,145	13,361	6,034	22,861	792	40,059	2,997	16,463	31,779
1994	47,604	5,455	8,900	11,850	3,988	17,411	401	32,392	4,800	10,011	30,318

자료 : 경찰청

이와 관련하여 학교주변의 유해업소가 난립하면서 학교주변 폭력배들이 유흥

비 마련을 위해 등하교길에 학생을 상대로 공갈, 협박, 금품갈취, 폭력 등을 일삼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학교폭력 단속현황(1995.1.5—1996.4.15.) (단위:명)

단속실적 종합				학원불량씨클				학생갈취폭력		
씨클수	계	구속	불구속	씨클수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998	130,871	33,537	97,334	998	6,576	3,291	3,285	74,213	21,327	52,886
분도,환각사범			청소년 성폭력			유해업소단속				
계	구속	불구속	계	구속	불구속	업소수	계	구속	불구속	
7,023	5,396	1,627	2,925	2,143	357	39,202	40,558	1,379	39,179	

자료 : 경찰청

이와같이 약15개월 동안에 13만여명을 검거하여 33,537명을 구속하고 97,334명을 불구속처리하였고 단속된 학원폭력씨클이 1,000여개에 이르고 갈취폭력사범이 7만4천여명, 유해업소단속을 통해 검거된 자도 4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경찰이 검거한 학교폭력 가해자 29,184명에 대한 분석자료를 보면

- 1) 유형별로는 단순폭력이 45.5%, 갈취폭력이 40.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 2) 장소별로 보면 주택가·골목길이 38.0%, 비디오방·락카페 등이 14.5% 오락실·단화방 등이 12.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3) 범행시간별로 보면 15:00—24:00가 78.5%, 그 중에서 18:00—21:00가 33.8%를 차지하고 있다.
- 4) 범행동기별로 보면 유흥비충당이 46.3%, 허영·사치심이 13.2%, 우연이 9.7%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로 이욕적인 동기가 64.5%를 점하고 있고
- 5) 가해자 가족환경을 보면 실부모가 77.5%, 결손가정이 22.5%, 실모부부인 경우가 5.6%, 실부무모인 경우가 4.4%를 나타내고 있으며
- 6) 가해자의 성별로 보면 남자가 87.0%, 여자는 13.0%를 점하고 있고
- 7) 신분별로 보면 중고교중퇴생이 40.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주변 폭력가해자는 양부모가 있는 남자 중퇴생이 18:00-21:00까지 주택가골목길에서 유흥비 마련 등 이욕적인 동기로 단순폭력 및 갈취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나. 대중매체

1) 방송매체

현대사회는 정보화사회라고 할만큼 정보를 전달하는 TV 등 방송매체는 그 광과성으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증대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다채널·다매체 시대에 돌입하면서 방송사들의 상업주의로 인한 음란성, 폭력성 프로그램 중심적으로 편성하여 방송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방송매체는 판단력, 지식, 경험 등이 미숙한 청소년들의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가치부여적 기능보다는 가치박탈적인 기능을 초래하여 모방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방송내용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일반국민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가치박탈적인 내용이 방송되지 않도록 심의절차를 거치는 등 청소년보호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4년 12월 개정하여 1995년 1월부터 시행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방송내용에 심의기준을 좀더 구체화한 것이다. 이 규정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보면 청소년의 정서를 해치는 괴성, 고함 및 소란스러운 행동 등의 화면이나 음향을 억제토록한 것과 어린이나 청소년의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성분제, 폭력, 범죄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에는 그들의 시청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한 것, 어린이 및 청소년의 시청시간대의 방송은 그들이 정서발달과정에 있음을 고려하여 방송토록 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어린이나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어린이·청소년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1994년 방송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초래하는 프로그램의 심사사유별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청소년관련 방송내용 심사사유별 현황 (단위:건)

제 재 사 유	보도교양	연예오락	계
어린이, 청소년에게 부적합하거나 비교육적인 내용	8	18	26
선정적, 퇴폐적인 내용	5	8	13
불건전한 내용 및 저속한 표현	1	20	21
비속어, 유행어, 외국어 사용 등 바른생활 저해	3	15	18
위법행위 조장 우려폭력,참상장면 과다묘사		6	6
어린이, 청소년프로그램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광고	1		1
산인, 비참한 표현 또는 충격을 주는 내용	3	5	8
범죄모방에 동기제공 우려	6	7	13
합 계	27	79	106

자료 : 공보처

이와 같이 전체 심사건수 106건 중에서 보도교양이 27건, 연예오락이 79건을 차지하고 있고 심사사유별로 보면 어린이·청소년에게 부적합하거나 비교육적인 내용이 26건, 불건전한 내용 및 저속한 표현이 21건, 비속어, 유행어, 외국어 사용 등 바른생활 저해 18건, 선정적·퇴폐적인 내용과 범죄모방에 동기제공 우려가 각각 13건의 순으로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방송내용들이 청소년의 비행 및 탈선조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2) 공연물

공연물이란 연극, 영화, 음반, 비디오 등을 포함하여 지칭하는 것이며 청소년보호와의 관계에서 보면 청소년이 관람할 수 없는 공연물에 대한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관람을 금지하고자 하는 선도, 보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연물은 도덕적으로 순화되고 윤리적으로 건장하며 예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양질의 공연물을 선별하고 이들이 관객에게 미칠 영향까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관람등급을 구분하여 일반국민의 이해를 돕고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의 등의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소극장 설치의 자유화, 문인, 예술가들의 성적 표현의 영역 확대요구 및 소극장의 연중 음란물 공연 등의 문제가 청소년의 보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연극의 경우 최근의 공연추세는 양극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외국에서 흥행에 성공한 뮤지컬작품 등 우수작의 초청공연 또는 국내제작공연이 계속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단순한 흥행만을 겨냥한 음란성 공연물이 지방극단을 필두로 하여 다투어 공연되는 현상을 보여서 전반적으로 연극수준의 질적 저하는 물론 상업주의의 목적으로 이러한 연극을 관람토록 청소년을 대상으로 티켓할인 및 객석 채우기 성행 등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표 5〉 영화의 공연추세 (단위:편)

연도 \ 구분	1991	1992	1993	1994
방화	121	96	64	65
외국영화	263	325	359	394

자료: 공보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화의 공연은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외국영화의 공연이 계속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외국영화의 내용에 담고 있는 서구의 물질주의, 퇴폐향락, 성개방풍조 등이 그대로 청소년들에게 모방심리를 자극하여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을 저버리고 음란퇴폐 및 향락문화에 심취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나아가 청소년들에 대한 마약범죄, 이육범죄, 성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³⁾

3) 공연물관람에 관한 이론은 정화이론과 학습이론이 있는데 정화이론(Catharsis Theory)은 대중매체의 폭력·음란 묘사 → 환상과 정화 → 영향없음 혹은 범죄감소효과를 나타내는 반면에 학습이론(Learning Theory)은 대중매체의 폭력·음란 묘사 → 사회적·심리적 공격성향 증가 → 모방범죄 혹은 범죄증가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 청소년층에 있어서는 학습이론이 두드러지게 적용된다. 전대양, "음란·폭력물의 시청과 범죄성과의 관계",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호, 1994, pp. 233-255.

다음은 음반과 관련하여 최근 컴퓨터산업의 발달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람하고 있는 신중 영상매체물도 청소년의 비행 유발에 한몫을 하고 있다.

1994년의 수입된 음반의 심의내용을 보면 전체 2,208건을 심의하여 CD-ROM 13건, FD 8건, 기타 심의물 13건 등 총 34건의 영상매체물을 수입불가조치를 취하였고 가요음반도 113,596건으로 이 중에서 112,850건이 통과되었으며 수정통과 371건, 반려 375건으로 나타났는데 반려된 작품의 사유별로 보면 외설 15건, 폭력 18건, 퇴폐불건전 24건, 마약환각 10건, 기타 8건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이 큰 비디오물의 경우 1994년 외국작품이 1,518편을 심의한 결과 614편이 수정통과되었고 국내작품의 경우 극영화가 104편, 창작극이 263편이었으나 창작극은 71편이 수정통과되었고 불합격도 6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음반 및 비디오물의 유통과정에서 저질, 폭력, 음란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음반 및 비디오물을 단속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불법음반 및 비디오물 단속현황 (단위:개)

연도별		1990	1991	1992	1993	1994
적발건수	합계	11,867	9,665	7,589	10,224	15,823
	형사고발	996	1,007	416	790	415
	행정조치	10,871	8,658	7,173	9,434	15,408
수거폐기량	합계	4,084,155	3,333,247	3,575,724	5,127,407	2,950,111
	비디오	507,707	121,978	91,542	97,384	81,947
	음반	816,100	1,104,342	1,964,233	1,232,356	1,170,168
	기타	2,760,348	2,106,927	1,696,949	3,797,667	1,697,996

자료: 문화체육부

위 표에서 적발건수를 보면 1992년까지는 감소하다가 1993년부터 증가현상을 나타내 1994년의 경우 15,823건을 적발하였고 수거폐기량을 보면 1991년에 감소하다가 1993년에는 5,127,407개를 수거폐기처분하였고 1994년에는 2,950,111개를 수거 폐기처분하여 급격히 감소하였다.

3) 인쇄매체

최근 개방화분위기에 편승하여 청소년의 문화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불량 인쇄매체물이 증가하여 청소년의 정서함양 및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량 인쇄매체물은 도서, 정기간행물 및 만화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심의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표 7〉 도서심의 현황(1994년) (단위:건)

구 분	심의건수	제 재	내 용				
			주 의	경 고	치재건의	거제중지	고 발
도 서	1,218	250	59	104	83	—	4
정기간행물	23,993	219	81	104	21	13	—

자료 : 문화체육부

〈표 7〉에서 도서의 경우 1,218건의 심의건수 중에서 250건이 제재를 받아 불량도서임이 나타나고 있고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23,993건의 심의건수 중에서 219건이 불량 정기간행물로 나타났다.

만화의 경우는 전체 7,409건의 심의건수 중에서 통과된 건수가 5,269건이고 전면개작, 폐기 등 제재를 받은 건수가 2,140건으로 나타나고 있어 29%가 청소년에게 불량만화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량도서의 유통과정에서도 불량 출판물 발행사에 대한 주의 촉구, 경고 등 행정제재를 가하는 한편 음란출판물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이를 출판한 출판업자, 인쇄인,판매인 등 65명을 고발조치하였고 40개 출판사를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66,473건의 불량출판물을 단속하여 청소년들이 유해도서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심의 등을 강화하고 있다.

2. 소년비행 동향

가. 비행소년의 동향

1) 소년특별법범의 증가

〈표 8〉 연도별 범죄소년의 발생현황 단위:명(%)

구 분 인 도	총범죄자	소년범죄자		
		형법범	특별법범	계
1990	1,146,745(100)	71,944(100)	11,325(100)	83,269(100)
1991	1,303,807(114)	68,834(96)	16,373(144)	85,207(102)
1992	1,302,228(113)	68,171(95)	18,770(166)	86,941(104)
1993	1,500,707(130)	77,112(107)	26,543(234)	103,655(124)
1994	1,463,186(127)	78,972(110)	26,749(236)	108,721(130)

자료 :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1994.

연도별 범죄소년 발생현황을 보면 총범죄자는 1990년을 100으로 할 때 1993년에 130을 나타내었고 1994년에는 127로 감소하였다. 소년범죄자의 경우 1990년을 100으로 할 때 계속 증가하여 1994년에는 130을 나타내어 성인범죄와 거의 같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년범죄자를 형법범과 특별법범으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형법범의 경우 1994년에 110을 나타내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에 특별법범의 경우는 꾸준히 증가하여 기준연도에 비해 거의 2.3배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학교주변폭력과 관련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범과 교통사범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 조폭화 및 절도범죄의 증가

강력범의 경우 매년 대인범죄와 대물범죄를 동시에 행하는 강도가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고 폭력범의 경우도 폭행 및 상해가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

고 있어 범죄소년의 조폭화경향이 현저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고 강간 등의 성범죄도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산범죄의 경우 절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9) 범죄소년의 범죄유형별 현황 (단위:명)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계		83,274	85,207	86,941	103,655	108,721
강력범죄	소계	5,256	3,347	3,235	5,008	5,518
	살인	133	89	77	106	76
	강도	3,075	2,163	2,026	2,913	4,017
	강간	1,977	1,031	1,056	1,938	1,363
	방화	71	64	76	51	62
폭력범죄	소계	38,543	34,020	31,419	36,043	40,561
	폭행·상해	38,202	33,717	31,055	35,638	40,153
	공갈	251	188	286	327	331
	협박	9	6	14	9	9
	손괴	81	109	64	69	68
재산범죄	소계	21,969	23,780	24,917	28,923	31,687
	절도	20,559	21,752	22,829	25,685	29,225
	횡령	184	610	559	657	825
	사기	519	662	751	1,061	865
	장물	707	756	778	760	772
기타	17,506	24,060	27,370	34,441	30,955	

자료: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1994.

3) 동기없는 범죄 및 이욕범죄의 증가

범죄소년의 범행원인별 현황을 보면 동기없이 우연히 범행한 경우가 매년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년들이 문화적 목표는 설정되어 있지

만 이를 달성하는데 있어 좌절감을 느껴서 사회에 대한 반항으로서 이러한 동기 없는 범죄를 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존과 살인범죄와 약가과 살인범죄도 이러한 유형의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욕이 우연 다음으로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흥비마련, 허영심, 사치심 등으로 인하여 절도나 강도범죄를 범행하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표 10〉 범죄원인별 동향 (단위:명)

연도 원인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이 욕	18,236	19,693	16,379	12,487	8,993	8,358	6,910	6,769	7,783	21,481
사 행 심	3,348	2,972	2,698	2,409	2,382	1,866	1,266	1,113	1,111	1,090
원한·분노	5,273	4,547	4,358	4,405	3,442	2,710	2,275	1,404	1,277	1,821
가정불화	165	159	122	112	99	106	96	80	91	141
유 욕	1,837	1,642	1,209	1,247	1,176	1,072	1,094	937	1,803	1,315
우 연	45,045	46,575	46,904	52,691	49,772	48,927	47,964	39,466	41,231	28,128
타약각성제	58	179	154	237	132	116	156	300	327	
취 중	6,835	6,023	6,437	5,986	4,666	4,170	4,147	3,928	4,449	
학 대	114	91	76	64	46	62	88	98	102	
모 욕 감	550	447	343	344	370	231	182	200	236	
우월감	1,351	1,335	1,009	1,076	1,023	794	440	286	382	
열등감	297	289	234	252	586	465	135	107	70	
호기심	2,274	2,246	2,211	2,188	2,086	1,941	1,923	1,780	2,605	10,147
현실불만	1,322	2,032	1,708	1,599	1,255	1,191	1,174	554	300	996
기 타				2	2,868	11,260	17,357	29,939	41,888	43,602
계	85,805	86,230	83,842	85,099	78,896	83,239	85,207	86,941	103,655	108,721

자료:경찰청, 경찰통계연보, 1994.

4) 중학교 중퇴생 및 고등학교 재학생 범죄의 증가

먼저 범죄소년의 학력별 동향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는 졸업자가 많은 인원

을 접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중학교의 경우는 졸업자는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중퇴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어 이들 중퇴자가 주로 학교주변 폭력, 성범죄 등 대부분의 범죄를 범하는 것으로 보여 이들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는 재학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은 학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여 자주 무단결석을 한다거나 교사나 부모로부터 관심밖의 인물로 낙인찍힌 학생들이므로 파악된다.

(표 11) 범죄소년 학력별 동향 (단위 : 명)

연도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미취학		424	334	309	349	287	586	349	373	315	168
초·중·고	소계	7,984	6,503	5,544	4,896	4,185	3,811	3,350	3,484	3,765	3,297
	재학	474	443	526	497	508	646	627	684	777	507
	중퇴	1,507	1,313	1,079	938	729	644	612	628	670	648
	졸업	7,934	6,003	4,747	3,939	3,461	2,948	2,521	2,111	2,172	2,318
중학교	소계	31,681	32,066	30,537	29,039	26,719	26,485	25,918	27,079	32,824	35,587
	재학	7,657	8,705	7,601	7,146	7,358	7,633	8,381	9,413	12,180	14,785
	중퇴	9,282	9,221	9,284	8,733	7,875	7,733	7,597	8,489	10,908	11,784
	졸업	14,742	14,140	13,652	13,160	11,486	11,119	9,940	9,177	9,736	9,018
고등학교	소계	41,212	41,808	42,078	44,121	42,871	46,476	49,660	50,933	61,364	63,405
	재학	19,182	19,129	18,196	19,225	21,403	21,443	21,428	22,466	27,922	31,465
	중퇴	10,197	10,433	10,749	10,882	9,306	9,304	8,621	8,844	11,816	13,087
	졸업	11,833	12,246	13,133	14,014	12,162	15,729	19,611	19,623	21,626	18,853
대학	소계	2,980	3,605	3,139	2,864	2,327	2,211	1,786	1,682	2,211	4,287
	재학	2,639	3,258	2,807	2,606	2,145	2,056	1,651	1,576	2,087	3,817
	중퇴	341	347	332	258	182	155	135	106	124	220
	졸업										250
비상	1,524	1,914	2,235	3,830	2,507	3,700	4,144	3,390	3,176	1,975	
계	85,805	86,230	83,842	85,099	78,896	83,269	85,207	86,941	103,655	108,721	

자료: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1994.

5) 결손가정출신의 비행증가

〈표 12〉에서와 같이 실부모가 생존한 경우는 1992년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증감을 계속하다가 1993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것은 가정불화 등 가정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12〉 범죄소년 가족관계별 동향 (단위:명)

연도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가족사항												
비	소 계	84,474	84,959	82,718	82,154	74,728	75,665	76,530	78,682	95,575	105,807	
	실 부모	67,207	68,202	66,339	68,522	63,074	63,739	65,310	66,673	80,244	85,189	
	계 부모	309	360	261	237	271	253	245	220	476	356	
	실모계부	1,098	935	892	773	601	742	665	777	903	1,038	
	실부계모	892	881	801	659	609	704	579	728	912	238	
	실부무모	2,889	2,945	3,011	2,468	2,185	2,271	2,337	2,566	3,708	5,611	
	혼	실모무부	9,515	9,213	9,086	7,557	6,165	6,170	5,675	5,982	7,063	9,815
		계모무부	131	119	100	96	189	221	333	205	284	94
		무 부모	2,408	2,285	2,210	1,828	1,621	1,543	1,366	1,503	1,959	2,807
		계부무모	25	19	18	14	13	22	20	28	26	659
기 혼	1,331	1,271	1,124	2,945	4,168	7,604	8,677	8,259	8,080	2,914		
계	85,805	86,230	83,842	85,099	78,896	83,269	85,207	86,941	103,655	108,721		

자료: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1994.

그러나 편부모인 경우 실부무모보다 실모무부인 경우가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가 생존하지 않아 모가 생계를 유지해나가는 하류계층의 가정이 많으므로 이러한 하류계층의 소년들은 부의 모델을 찾아 가정밖으로 나가서 각종 비행집단이나 불량씨클에 가입하여 비행을 일삼는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고아등 무부모인 경우도 고아원 등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어 시설직원과

의 애정과 친밀감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반항적, 거부적 심정을 가지거나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를 나타내기 쉽고 따라서 반사회적인 비행에 빠지기 쉬운 것으로 분석된다.

6) 중상류층 출신 소년의 범죄증가

〈표 13〉에서와 같이 하류층 출신 범죄소년은 1985년 이후 7-8만명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류층 출신의 범죄소년은 1985년에 비해 약 3.5배, 하류층 출신 범죄소년은 약 1.8배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상류층 출신의 범죄소년이 증가하는 이유는 부모의 맞벌이로 인한 대화 기회의 부족과 금전이 필요한 약물범죄 등을 범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13〉 범죄소년의 생활정도별 동향 (단위 : 명)

연도 정도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하류	77,066	76,762	74,269	75,409	69,794	72,378	71,191	70,371	80,836	79,250
중류	8,433	9,192	9,321	9,425	8,853	10,576	13,666	16,254	22,477	28,955
상류	271	276	252	265	249	315	350	316	342	516
계	85,805	86,230	83,842	85,099	78,896	83,269	85,207	86,941	103,655	108,721

자료 :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1994.

나. 촉법소년의 감소

촉법소년은 형사법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으나 형사책임연령이 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은 12세이상 14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이러한 촉법소년의 동향을 보면 1988년에 전체소년범중 3.3%를 나타내었으나 다시 감소하였고 1992년을 기점으로 하여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라. 가출인의 증가 및 미아의 감소

(표 16)에서와 같이 가출인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가출이란 정신적 갈등의 해결이나 생활목표 달성 등을 위해서 가족을 떠나 안주의 장소를 구하려는 일종의 도피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 동기는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들 수 있는데 전자는 개인의 심리적 불안이나 가치관의 혼동 등을 들 수 있고 후자는 가정불화, 학교부적응, 불량교우관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가출인들은 비행 등의 불량한 환경에 처하기 쉬우며 특히 가출소년의 경우는 부당한 노동조건하에서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가출소녀의 경우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다방종업원이나 유흥업소 종업원 나아가 사창가 등 범죄의 소굴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미아의 경우는 점차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것은 연령이 어린 유아가 많은 것은 대부분이므로 비행과는 거의 관련이 없으나 경찰은 이러한 가출인, 미아를 신속히 발견·수배하고 선도보호하기 위하여 182전산수배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표 16) 요보호소년의 발생동향 (단위: 명)

연도 전과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가출인	9,714	8,406	11,386	12,803	12,816	12,762	11,414	12,479	11,933	13,522
미아	21,607	30,173	29,516	22,537	16,004	10,572	10,110	8,425	6,651	4,396
계	31,321	38,579	40,902	35,340	28,820	23,334	21,524	20,904	18,584	17,918

자료: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1994.

Ⅲ. 소년경찰의 비교검토

1. 일 본

가. 연 혁

일본의 소년경찰은 실질적으로 경찰이 행하는 활동 중에서 소년비행의 방지와 소년의 건전육성이라는 목적에 따라 활동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활동목적에 따라 소년경찰이 조직상 독립된 것은 종전이후라고 할 수 있다.

1) 탄생기

1945년 종전이후 혼란한 사회상황을 배경으로 청소년비행이 급증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찰도 체제정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1946년 내무성은 「少年에 대한 防犯機構의 整備에 대하여」라는 지침을 시달하였고 이에 따라 각 부현 경찰에 설치된 소년과 또는 소년계는 소년범죄를 처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의 협력, 계몽활동, 소년상담 기타 불량화 방지를 위한 광범위한 활동을 관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전후에 처음으로 경찰활동 중 소년의 건전육성에도모하기 위하여 경찰조직의 일부에서 소년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체제가 정비되었다.

그후 구경찰법이 시행되고 신소년법이 시행되면서 1949년 10월 「少年警察 強化에 대하여」라는 지침이 시달되었다. 이 지침에는 처음으로 소년경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소년경찰의 임무로서 ① 관계기관과의 연락조정 ② 문제소년에 대한 적정한 조치 ③ 유해환경의 정화 ④ 건진하고 명랑한 환경조성에 대한 계몽지도 및 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광범한 활동을 시달하였다. 그 후 1950년 6월 경찰, 검찰, 가정재판소의 협의로 일정한 경미한 소년사건에 대하여 簡易送致制度를 도입하게 되었다.

2) 정비기

1952년 4월에는 「少年警察의 推進에 대하여」라는 지침이 시달되어 소년이 범죄를 범하는 원인을 구명하고 사건처리의 적정화를 기함과 동시에 비행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소년을 범죄로부터 지킨다는 입장에서 소년경찰의 설치를 추진하였다.

또한 1954년 경찰법 개정에 의한 경찰제도의 개편, 그해 10월에는 「少年警察 運營에 대하여」라는 지침이 시달되어 문제소년의 조기발견 및 보도와 소년의 유해환경 배제활동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하여는 소년경찰체제의 정비강화와 지역의 협력체제의 확립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55년에는 ① 부인 등의 특성을 활용하여 북해도 경찰이 婦人輔導員제도를 도입한 이후 많은 부현경찰이 이 제도를 채용하였다. ② 1959년에는 경찰청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科學警察研究所의 방법부 산하에 輔導研究室과 環境研究室을 설치하여 소년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수행되었다.

③ 1960년에는 「少年警察活動要綱에 대하여」라는 지침에 의거하여 소년경찰운영 및 활동방법의 기준이 제시되었고 또한 「少年輔導員 등의 직무에 관하여」라는 지침에 의거 도도부현 경찰의 효과적인 운영이 강구되었다. ④ 1962년 각 도도부현 경찰이 독자적으로 운용하고 있던 소년보도원제도를 경찰청이 인정하여 예산상의 지원을 하게 된 후 소년보도원제도는 대표적인 소년관계 자원봉사자가 되었다.

⑤ 1963년 경찰청과 문부성의 협의하에 「少年非行防止를 위한 學校와 警察과의 連絡強化에 대하여」라는 지침을 근거로 하여 학교와 경찰과의 협력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학교-경찰연락협의회가 조직되었다.

3) 강화기

이 시기는 정비된 소년경찰체제를 기반으로 소년사건처리제도를 중심으로 질적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① 1969년 犯罪搜查規範이 개정됨에 따라 簡易送致基準이 개정되고 경미한 사건

의 처리의 적정화를 기하였다. ② 1970년에는 각 경찰서에 소년사건의 처리를 검토하고 소년처리의 적정화를 기할 목적으로 少年事件選別主任者를 두도록 하였다. ③ 1971년 소년사건처리 담당자를 두어 소년사건의 적정한 처리에 노력하도록 하였다. ④ 1973년 소년처우에 필요한 재비행위험성을 과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남자초범소년에 대한 再犯危險性 判定法이 실시되었다.

4) 성숙기

이 시기는 소년경찰의 정비 및 강화기를 배경으로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각종 종합적인 방안이 강구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① 1976년 경찰청 조직령이 개정되어 경찰청 보안부내에 방범소년과에서 분과된 소년과가 설치되었다. 이렇게 하여 처음으로 국가의 행정조직상 소년경찰을 주관하는 부서가 설치된 것이다. ② 1980년 少年輔導員이 전국소년보도원협의회를 결성하여 상호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노력하게 되었다. ③ 1981년 경찰청에서 경찰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少年非行綜合對策委員會를 두었고, 도도부현 경찰에는 경시총감 또는 경찰본부장을 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소년비행방지대책을 검토하게 되었다. ④ 1982년 폭력비행집단에 의하여 비행양상이 흉악화, 조폭화하는 가운데 각 도도부현에서 少年警察協助員이라는 자원봉사자가 위촉되고 비행집단의 해체보도에 노력하게 되었다. ⑤ 1982년 경찰청소년비행종합대책위원회가 소년경찰체제의 내실화, 소년보도 및 보호활동의 강화,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적인 비행방지대책으로서 少年非行綜合對策要綱을 제정하여 각 도도부현 경찰에 시달하였다. 또한 규범의식의 계몽을 하기 위하여 소년의 건전육성을 기하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참가활동을 제시하는 한편 소년에게 극기심이나 자립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사회적 규범을 체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서 등의 도장을 개방하여 소년에게 유도나 검도를 행하도록 소년유·검도활동을 시작하였다. ⑧ 1984년 날로 악화되고 있는 풍속환경에서 청소년을 지키고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찰청은 「風俗營業 등 團束法」 일부를 개정하여 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섹스산업 등을 규제하는 한편 소년을 유해한 환

경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소년보도 등의 활동을 행하는 법률상의 자원봉사자인 少年指導委員制度를 신설하였다.

나. 관련 조직 및 인력

일본의 소년경찰활동은 소년경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파출소 직원 등 외근 방법경찰과 수사기능을 담당하는 형사경찰 등의 전경찰조직에 의한 橫的인 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소년경찰은 중추적인 역할만 담당하고 있을 뿐 자기완결적인 조직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소년경찰의 조직을 규정하고 있는 警察廳組織令(1994년 개정)을 기초로 하여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경찰청 생활안전국 소년과의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소년비행 방지에 관한 조사 및 기획에 관한 일
- ② 소년보도위원회에 관한 일
- ③ 소년보도에 관한 일
- ④ 소년의 복지를 해하는 범죄의 단속에 관한 일
- ⑤ 미성년자깍연금지법 및 미성년자유주금지법의 규정에 의한 깍연 및 음주단속에 관한 일 등이다.

또한 경찰청의 부속기관인 科學警察研究所의 防犯少年部に 輔導研究室과 環境研究室이 설치되어 있다. 보도연구실은 ① 비행소년의 성격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및 실험에 관한 일 ② 소년비행성의 징표 및 비행위험성의 판정방법에 관한 연구 및 실험에 관한 일 ③ 비행소년에 대한 면접 및 기타 보도기술 및 시설에 대한 연구 및 실험에 관한 일 ④ 보도에 종사하는 직원의 적성 및 교육훈련의 방법에 관한 연구 및 실험에 관한 일 등의 업무를 취급하고 환경연구실은 ① 소년비행을 유발하는 사회적 환경에 관한 연구 및 실험에 관한 일 ② 소년비행방지를 위한 지역활동에 관한 연구 및 실험에 관한 일 ③ 성범죄, 알콜중독범죄 기타 특수한 범죄의 방지에 관한 연구 및 실험에 관한 일 ④ 성범죄, 알콜중독범죄 이외의 범죄의 방지에 관한 연구 및 실험에 관한 일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동경경시청은 ① 부총감아래에 생활안전부가 설치되어 있고 생활안전부에는 방법총무과, 생활과, 보안제1과, 보안제2과, 소년제1과, 소년제2과가 설치되어 있다. 소년제1과의 소관사무는 ① 소년경찰의 조사, 기획, 지도 ② 우범소년, 불량행위소년의 보도, 상담 및 자질감별 ③ 가출인, 미아의 수색, 수배, 보호 ④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소년경찰업무를 처리하는 것 등이고 소년제2과의 소관사무는 ① 범죄소년, 촉법소년의 보도 ② 소년의 복지를 해하는 성인범죄의 수사 ③ 시설도주소년의 수배 및 보호 등이다.

따라서 소년제1과는 우범소년과 불량행위소년을 대상으로 소년을 선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에 소년제2과에서는 범죄소년과 촉법소년, 성인복지법 및 시설도주소년을 대상으로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소년경찰의 독특한 조직으로서 동경경시청 소년제1과의 외곽기관으로서 소년보호센터가 동경도내에 7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서는 ① 소년의 보도, 상담, 자질감별 ② 지역소년문제의 조사연구 ③ 지역별 소년경찰 홍보 ④ 소년상담실과 가출소년의 보호를 위한 소년보호소의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부총감아래에 95개의 경찰서가 설치되어 있는데 각 경찰서 소년계는 경시청의 소년제1과와 소년제2과의 분장된 사무를 경찰서 관할구역내에서 통합하여 처리하고 있다.

일본의 소년경찰업무를 담당하는 관련조직은 다음 <표 17>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각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소속하에 少年指導委員이 소년의 보호 및 보도활동, 풍속영업 등에 대한 협력요청 등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활동을 행하면서 약 5,000명이 활동하고 있다. 각 도도부현 경찰의 소속하에 활동하고 있는 少年輔導員은 경찰서장의 추천으로 경시청 또는 경찰본부장이 위촉한 민간인으로서 현재 약 55,00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보호사, PTA(사친회, parent-teacher Association)회원, 민생위원, 청소년육성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활동내용은 소년의 보호 및 소년상담, 가두보도, 유해환경정화, 지역사회의 계몽 등 소년의 비행방지와 건전육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표 17〉 소년경찰관련조직

기관명	설치주체	기관의 업무	상담업무의 개요	상담자	상담 형태	설치상황
① 경찰청 (생활안 전국소년 과) ② 도도부현 경찰본부 ③ 경찰서	① 도도부현 경찰(공 안위원회 가관리)	① 비행소년 의 보도 ② 복지법의 단속 ③ 소년상담 ④ 기타	① 비행, 불량 행위 ② 기타 소년 의 건전 육성에 관한 상 담의 수리	① 소년상담 전문직원, ② 소년담당 경찰관, ③ 부인보도 원	면접, 전화 등	1312개소 ① 도도부현 경 찰본부(51) ② 경찰서(1261)
소년 보도센터	① 도도부현 ② 시정촌, ③ 시정촌의 조합협의회 ④ 관계기관 · 단체의 협의회 ⑤ 민간	① 가두보도 ② 환경정화 활동 ③ 소년상담	① 청소년분 제에 관 한 상담	① 소년상담 담당자	전화, 면접 상담	695개소 ① 도도부현(20) ② 시정촌(596) ③ 시정촌의 조 합협의회(76) ④ 관계기관, 단체 의 협의회(2) ⑤ 민간(1)

도도부현 경찰 소속하에 少年警察協助員이 약 1,10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비행집단에 소속한 소년에 대하여 그 집단에서 이탈하게 하거나 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지도, 상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전역의 695개소의 소년보도센터에서 근무하는 少年輔導委員은 74,00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가두보도, 계속보도, 소년상담이나 보도소년의 가정, 학교, 직장에서의 연락 및 전문기관에서의 통고, 환경정화활동, 홍보활동 등을 행하고 있다.

또한 각 도부현에서 채용하고 있는 婦人輔導員을 들 수 있다. 부인보도원제도는 비권력적 활동의 분야로서 여성의 섬세하고 보성애적 특성을 살려서 소년의 심상에 적정한 처우를 행하기 위해서 1955년 북해도 경찰이 처음으로 시작하였

고 그후 점차로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형태로 도부현 경찰에서 채용하였다. 그러나 동경경시청에서는 부인보도원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

경시청이 부인보도원제도를 채용하지 않는 이유는 ① 비교적 많은 여자경찰관을 채용하고 있다는 점 ② 전국의 소년보도센터는 지방공공단체가 그 설치주체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경찰은 민생부, 아동상담소, 교육위원회, 가정재판소 등의 운영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반하여 동경의 경우는 소년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주체가 경찰이란 점에서 부인보도원이 활동하지 않고 있다.

부인보도원은 상근 또는 비상근의 경찰신분으로서 소년비행방지활동 중에서 사범경찰의 권한을 제외한 비권력적 사실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고 있다.

부인보도원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도부현경찰은 이들에게 ① 가두보도 ② 상담보도 ③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처리 ④ 계속보도 및 사후보도 ⑤ 유해환경정화활동 ⑥ 관계기관과의 연락활동 등의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부인보도원의 소년사건의 처리기준은 범죄소년의 경우는 소년계 경찰관에게 인계하고 촉법소년의 경우는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아동상담소에의 통고를 행하며 우범소년의 경우는 여자 및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가정재판소 송치, 아동상담소 통고를 하는 등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다. 운용

1) 활동 개관

일본의 소년경찰은 일차적으로 모든 비행소년을 대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찰이 비행소년을 발견한 경우 소년의 특성을 충분히 배려하여 보호자 등과 연락을 취하기 때문에 비행의 원인, 배경, 소년의 성격, 교우관계, 보호자 등의 감호능력 등을 검토하고 재비행방지를 위한 처우의견을 첨부하여 관계기관에 송치, 통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경찰에서 행하는 비행소년의 처우 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범죄소년

범죄소년은 형사소송법, 소년법 등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 및 조사를 행한 후 벌금형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가정재판소에 송치하고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는 사건은 검찰에 송치한다.

② 촉법소년

촉법소년은 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감호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아동상담소에 통고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적당한 조언을 행하는 등의 조치를 행하고 있다.

③ 우범소년

우범소년은 18세이상 20세 미만의 경우는 가정재판소에 송치하고 14세이상 18세 미만의 경우는 사안의 내용, 가정환경 등을 판단하여 가정재판소 또는 아동상담소에 송치 또는 통고하며 14세 미만의 경우는 아동상담소에 통고하고 있다.

2) 범죄소년사건의 처리

일본경찰은 소년사건을 소년계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소년경찰이 설치된 이후 소년경찰의 업무분장의 미흡과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사안의 성질에 따라 형사경찰이 소년사건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규정한 지침이 1960년 3월 18일 경찰청이 소년경찰활동의 종합적 기준으로서 제정한 「少年警察活動要綱」이다. 예를 들면 ① 성인피의자와 관련된 사건 ② 수사상 중요하고 복잡한 사건 ③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등의 수사는 형사경찰이 담당하고 있다(소년경찰활동요강 제16조 1항). 이런 경우에 소년의 적정한 처우를 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은 형사경찰에게 소년계와 항상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소년 등의 조사는 소년계에서 행하도록 배려해야 한다(동조 제2항).

소년법은 범죄소년사건의 처포·구속의 경우도 구류에 대신하는 觀護措置⁴⁾(소년

4) 일본 소년법 제17조는 신병조치로서 관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소년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호에 관한 임시조치에 해당한다. 그 내용을 보면 ① 가정재판소는 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i) 가정재판소의 조사관의 관호에 부치는 조치와 ii) 소년감별소에 송치하는 조치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법 제43조), 구류의 제한(제48조), 소년사건 취급의 성인과의 분리(제49조), 사법경찰관의 전건송치주의(제41조) 등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일반에 있어서는 성인사건과 동일하게 형사소송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소년사건의 수사는 요보호성의 판단이 필요하고 소년이 방어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성인사건과는 다른 관점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범죄소년수사의 이러한 미비점을 하위법령에서 보완하고 있는데 이것이 1957년 국가공안위원회가 제정한 「犯罪搜查規範」이다.

소년경찰은 이론적, 실무적으로 소년법제 중에서 비행소년의 가장 중요한 처우기관이라고 인식되고 있어 범죄소년을 관계기관에 반드시 송치, 통고하는 全件送致主義는 채택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범죄소년을 수사하는 데는 범죄원인 및 동기와 함께 당해 소년의 성격, 행상, 경력, 교육정도, 환경, 가정상황, 교우관계 등을 세밀하게 조사해야 한다(범죄수사규범 제202조). 소년사건진술조서는 소년의 성장환경, 학교관계 등을 조사하고 요보호성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범죄수사규범 제175조). 그러나 요보호성 판단을 위한 이와 같은 자료수집은 소년이나 관계자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형사소송상의 양형자료수집과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여야 한다. 즉 소년의 건전한 육성, 보호라는 소년경찰의 목적과 실제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상의 목적이라는 이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강한 의식이 자리잡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경찰단계에서 자료를 철저히 조사, 수집하여도 법관의 조사명령에 의한 조사관의 조사가 보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3) 소년보호활동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병구속을 하는 경우 관호조치에 의한 소년감별소의 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구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류에 대신하는 관호조치란 소년의 신병구속기간을 가능한 한 짧게 한다는 취지에서 기간을 10일로 한정하고 소년의 신병구속장소를 성인과 분리한다는 입장에서 소년전용시설인 소년감별소로 지정한 것이다. 그러나 구류에 대신하는 관호조치는 거의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소년에 대하여 구류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성인과 함께 동일한 장소인 경찰서의 유치장(대용감옥)에 수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소년경찰은 비행소년을 발견하여 관계기관에 송치, 통고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비행소년 등을 보도하고 유해환경을 정화하는 활동을 통하여 소년의 비행방지 및 건전한 육성을 행하는 처우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년보도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선도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총칭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보도란 비행소년 등을 발견,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송치 또는 통고, 소년에 대한 주의, 조언을 행하는 등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분계소년을 선도하기 위한 활동이고 이러한 활동은 소년법 및 아동복지법에 의한 비행소년 및 요보호소년에 대한 소년보호절차의 전단계 및 이러한 소년에 준하는 자(불량행위소년)에 대한 경찰고유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소년보도활동은 가두보도, 계속보도, 사후보도, 상담보도 등으로 구분하여 논하여 보고자 한다.

① 가두보도

경찰은 비행소년을 가능한 한 조기에 발견하고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년계의 경찰관, 부인보도원 등이 중심이 되어 소년의 출입장소인 유흥가, 공원, 역 등에서 가두보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소년비행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춘계, 하계, 연말연시에는 소년보도의 특별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가두보도를 강화하고 있다.

비행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가정, 학교 등 관계자와 연락을 취하여 비행의 원인, 소년의 성격, 교우관계, 보호자 등의 감호능력 등을 검토하고 소년이 재비행을 범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가 가장 적절한가를 판단하여 소년법, 아동복지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 처우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관계기관에 송치, 통고를 하고 있다.

불량행위소년은 그 소년이 후에 비행행위를 하거나 복지범죄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주의를 주거나 조언을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나 학교에 연락하여 지도나 조언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찰은 비행소년 및 요보호소년에 대한 제1차적인 접촉기관으로서 비행소년 또는 요보호소년의 성격, 가정환경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처우상의 의견을 첨부하여 가정재판소, 아동상담소 등에 송치, 통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

찰에 의한 질차는 그 후의 비행소년 및 요보호소년의 처우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즉 이러한 경찰활동은 비행소년 및 요보호소년에 대한 가정재판소 등에 의한 처우의 전단계이지만 비행소년 및 요보호소년처우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불량행위소년은 소년법이나 아동복지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소년에 대하여 경찰에 의한 적절한 처우가 행하여지는 것이 소년비행방지 및 건전한 육성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이 소년보도를 위해서 관계기관에 송치하고 통고하는 것은 관계기관의 사무를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경찰의 임무에 비추어 당연히 부과된 책무라고 할 수 있다.

2) 계속보도

계속보도란 비행소년이라고 인정되지는 않지만 문제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보호자의 의뢰에 의하여 또는 장래 비행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할 경우에 계속하여 행하는 보도를 말한다.

현행법상 경찰에만 의한 조치가 인정되는 비행소년은 14세미만의 우범소년과 촉범소년이고 아동복지법 25조에서 규정하는 보호자 없는 아동이나 보호자에게 감호를 받는 것이 부적당한 아동은 제외하고 보호자 등으로부터 통고된 소년에 한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질차의 실제에 있어서 보면 경찰단계에서 외형상으로 범죄소년이나 촉범소년에 해당하는 데도 소년의 기대가능성 등에 비추어 그 행위를 범죄로서 보지 않거나 엄밀한 의미에서 우범소년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송치, 통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경찰단계에서는 이러한 소년을 취급하면 불량행위소년이라고 한다. 즉 소년경찰이 사실활동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불량행위소년은 본인, 보호자에 대한 주의, 조언을 하거나 본인, 보호자의 방문을 받아 소년상담을 행하는데 이러한 활동은 비행화의 단초를 조기에 차단하여 소년의 보호육성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불량행위소년에 대하여 경찰은 보호자가 감호협력을 구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속보도를 행하고 있다.

3) 사후보도

사후보도란 가정에서 송치, 통고된 소년에 대하여 송치, 통고를 받은 기관이 구체적인 필요한 활동을 전개할 때까지, 소년경찰이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도를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1958년 5월 경찰청 방법과가 작성한 「問題少年補導要領改正假案」중 제4장에 규정되어 있었지만 1960년 3월에 제정된 소년경찰활동요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일본의 현행법제상 송치, 통고된 소년은 경찰의 관리하에서 이탈되어 있으므로 당해 소년에 대하여 소년경찰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다른 기관의 권한을 침해하게 된다는 취지에서 사후보도를 소년경찰활동요강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사후보도는 소년의 신병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송치, 통고된 소년은 소년법원 등 관계기관이 구체적인 활동을 개시할 때까지의 기간동안 보도가 계속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비행의 위험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소년을 가정에서 송치, 통고한 경우에는 범죄예방 및 소년보호의 관점에서 방관하는 것을 허용치 않고 소년경찰은 이를 신속하게 조치하여 관계기관에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어떤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의 기간동안 보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후보도의 기본적인 조건은 관계기관에 연락을 취하고 재비행의 위험성이 크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④ 상담보도

경찰은 경찰본부 및 경찰서에 소년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심리학 등을 이수한 전문직원이나 경험이 풍부한 소년계의 경찰관, 부인보도원을 배치하여 소년과 보호자 등의 상담을 받아 필요한 지도나 조언을 행하고 있다.

소년상담을 보다 이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전용전화를 개설하는 한편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이지메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지메 110번이라는 전용전화를 개설하는 도도부현 경찰도 있다. 이 외에 공민관 등에 출장하여 상담 업무를 행하고 있다. 1994년에 경찰이 수리한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건수는 86,381건인데 그 구체적인 상담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년보다도 보호자에 대한 상담이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보호자가 소년을 잘못 보호하고 훈육하여 우범소년이나 불량행위소년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한편, 보호자가 우범소년이나

불량행위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표 18〉 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내용 (단위:명(%))

내용 대상	성·건 강문제	교우 관계	학교 문제	비행 문제	가정 문제	범죄 피해	가출 문제	기타	계
소년	5,317 (25.6)	4,905 (23.6)	3,372 (16.2)	1,836 (8.8)	1,393 (6.7)	761 (3.7)		3,184 (15.3)	20,768 (100)
보호자	2,400 (3.7)	6,712 (10.2)	6,129 (9.3)	18,325 (27.9)	8,608 (13.1)	2,898 (4.1)	12,702 (19.4)	7,839 (11.9)	65,613 (100)

자료 : 總務廳靑少年對策委員會 編, 靑少年白書, 平成7年(1995), p. 395.

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내용은 성·건강문제(25.6%)가 가장 많고 다음이 교우관계(23.6%), 학교문제(16.2%), 비행문제(8.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이한 점은 교내폭력, 이지매 등의 범죄피해(3.7%)도 다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내용을 보면 비행문제(27.9%), 가출문제(19.4%), 가정문제(13.1%), 기타(11.9%), 교우관계(10.2%), 학교문제(9.3%)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비행문제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같이 경찰의 소년상담은 소년과 보호자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 소년보다도 보호자에 대한 상담이 3배이상 많은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다.

4)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① 인적 정화

소녀에게 매춘을 강요하거나 소년에게 신나 등을 밀매하는 등 소년의 복지를 해하는 복지범은 소년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현저히저해하므로 경찰에서는 成人福祉犯의 단속과 피해소년의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경찰청 조직령 제13조 2항에 경찰청 생활안전국 소년과의 소관사무로서 「少年의 福祉를 害하는 犯罪의 團束에 관한 일」을 규정하고 있고 소년복지를 해하는

범죄의 단속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성인복지범이란 소년법 제37조가 일정한 성인사건을 가정재판소에 관할케 한 데서 유래하고 연혁적으로는 이러한 범죄를 복지범죄라고 부르지만 현재 경찰청 및 도도부현 소년경찰이 그 단속을 주관하는 복지범은 소년법 제37조에 열거된 범죄에 한정하는 데도 불구하고 당해범죄가 소년을 학대 또는 혹사하거나 기타 소년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년의 건전한 육성의 관점에서 그 수사를 소년보호활동을 담당하는 소년경찰이 이를 병행하고 있다. 1994년 복지범의 각 법령별 검거현황을 보면 전체 성인복지범 9,649명 중에서 청소년보호육성조례위반(31.9%)이 가장 많고 독물 및 극물단속법위반(25.9%), 풍속적정화법위반(17.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994년 현재 복지범의 법령별 폭력단 관련현황을 보면 전체 성인복지범 9,649명 중 1,081명을 나타내 11.2%를 차지하고 있다. 법령별로 보면 각성제단속법 위반(46.1%)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위반(30.4%), 직업안정법 위반(29.0%)순으로 나타나고 있다.⁵⁾ 경찰청은 폭력단원이 관여하는 복지범 이외에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방지 등에 법률에서 규정한 소년에 대한 가입권유 등 금지규정에 따라 소년의 폭력단 이탈과 가입방지대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년을 폭력단으로부터 보호하는 활동을 추진하는 등 소년에 대한 폭력단의 영향을 배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② 공간적 정화

일본경찰은 전국의 등 286개소의 가라오케, 유해자동판매기 등이 밀집해 있는 유해장소를 「소년을 지키는 환경정화 중점지구」로 지정하여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가 중심이 되어 환경정화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소년을 비행으로부터 지킬 필요성이 높은 우범지역, 출입제한구역 등 419개 지역을 「소년을 비행으로부터 지키는 시범지구」로 지정하여 비행소년 등의 보도활동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소년초범자들이 범하기 쉬운 들치기(萬引癖, Shoplifting)와 자동차

5) 總務廳青少年對策委員會 編, 青少年白書, 平成7年, pp.375-376.

절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들치기의 경우 들치기방지협의회 등을 통하여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 대하여 상품의 진열방법의 개선이나 보안체제의 강화 등의 업계의 자주적인 방지대책을 권장하고 있고 자동차절도에 대하여는 방법등록이나 효과적인 시건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관공서, 역 등의 주차장을 방법공간으로 설계, 건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라. 예방 및 선도프로그램

경찰은 관계기관, 지역사회 등과 협력하여 환경미화활동, 사회복지활동 등 사회봉사활동이나 전통문화의 계승활동, 지역산업체의 생산체험활동 등을 지역실태에 맞게 다양한 소년의 사회참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경찰서의 도장을 개방하여 지역의 소년들에게 유도 및 검도를 지도하는 소년유도검도교실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실을 통하여 전국방법협회 (재)주최 전국 경찰소년유도검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마.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1) 도도부현 등 지역사회

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은 일반시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1955년을 전후하여 일본의 각 도도부현에서는 청소년보호육성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하여 1975년까지 46개의 도도부현에서 청소년보호육성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의 특징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일반법적인 기능을 하고 풍속영업법, 아동복지법 등 국가의 법률은 보조적, 간접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보호육성조례는 기본적으로 판매규제, 자동판매기의 규제, 출입제한 등 청소년을 둘러싼 유해환경의 규제와 음행규제, 문신규제, 심야의출규제 등 청소년

년자신에 대한 유해행위의 규제에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청소년의 육성보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제정 등 1차적,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국가는 2차적,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학교

학교와의 협력관계를 보면 학교·경찰연합회의를 두어 학교와 경찰간의 비행방지를 위한 연락을 행하고 아동과 학생의 비행실태에 기인한 구체적인 대책의 협의와 사례연구 등 외에 합동가두보도를 통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3) 직장

또한 청소년의 직장과 경찰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장·경찰연합회의를 두어 근로청소년의 비행실태를 파악하고 비행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협의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 미 국

가. 역사적 발전과정

미국의 소년경찰은 인력과 조직의 두가지 측면에서 소년경찰의 발전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인력의 측면에서 보면 소년경찰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지역사회, 학교, 사회체육시설, 우범지역 등 소년의 집합장소를 파악하고 소년법에도 정통해 있어야 하며 소년법원의 기능과 지역사회관계를 유지하고 송치 및 전환기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소년경찰의 교육훈련의 목적은 불개입을 한다든지, 부모 및 교사와 상담을 한다든지, 전환을 한다든지 소년법원에 송치를 한다든지 간에 가능한 한 최선의 결과를 얻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소년경찰은 비행소년에 대한 소년사법절차에의 불개입과 지역사회의

년자신에 대한 유해행위의 규제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청소년의 육성보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제정 등 1차적,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국가는 2차적,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학교

학교와의 협력관계를 보면 학교·경찰연락협의회를 두어 학교와 경찰간의 비행방지를 위한 연락을 행하고 아동과 학생의 비행실태에 기인한 구체적인 대책의 협의와 사례연구 등 외에 합동가두보도를 통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3) 직장

또한 청소년의 직장과 경찰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장·경찰연락협의회를 두어 근로청소년의 비행실태를 파악하고 비행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협의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 미 국

가. 역사적 발전과정

미국의 소년경찰은 인력과 조직의 두가지 측면에서 소년경찰의 발전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인력의 측면에서 보면 소년경찰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지역사회, 학교, 사회체육시설, 우범지역 등 소년의 집합장소를 파악하고 소년법에도 정통해 있어야 하며 소년법원의 기능과 지역사회관계를 유지하고 송치 및 전환기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소년경찰의 교육훈련의 목적은 불개입을 한다든지, 부모 및 교사와 상담을 한다든지, 전환을 한다든지 소년법원에 송치를 한다든지 간에 가능한 한 최선의 결과를 얻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소년경찰은 비행소년에 대한 소년사법절차에의 불개입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추구해야 하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조직의 측면에서는 1899년 일리노이주 시카고시에 최초로 소년법원이 설치되어 소년사법제도의 최전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경찰은 소년법원에 송치하는 업무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1905년 오레곤주 포틀랜드시에서 여자경찰이 소녀에 대한 비행예방 및 보호업무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 하여 1909년에는 L.A.경찰국은 소년과를 설치하였다. 1916년까지 뉴욕경찰국은 시민의식, 체육, 군사훈련 등의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로 구성된 소년경찰대(Junior Police)을 창설하였다. 이 조직은 후에 경찰의 지원하여 운영되는 청소년 오락프로그램인 경찰체육연맹(PAL, Police Athletic League)으로 발전하였는데 이것은 경찰이 청소년과 비공식적인 부친, 혹은 장남의 관계에 있다면 청소년들은 경찰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되고 스스로 비행을 자제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운영되었다.

1930년에 뉴욕경찰국에 범죄예방과(Crime Prevention Bureau)가 설치되고 그 기능은 소년전문가에 의한 비행소년의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이 과의 소년경찰은 소년과 가정의 욕구를 파악하고 사회복지기관에 송치하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훈련된 요원들로 구성되었고 사회사업가도 2차세계대전까지 범죄예방과의 소속으로 활동해 왔다.

오늘날 범죄예방과는 소년지원반(Youth Aid Division)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16세이하인 비행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체포하거나 경찰서로 동행하는 대신에 소년지원반에 출두를 조건으로 하여 보호자에게 인계한다. 출두전에 경찰은 소년의 비행경력, 소년 또는 가정이 과거에 사회복지기관의 원조를 받은 경향이 있는가를 조사하여 소년과 보호자가 출두하면 소년경찰은 당해 사건을 법원에 송치하지 않고 비행을 계속하면 가정법원에 송치된다는 내용을 그들에게 설명한다.

상당한 상담이 이루어지면 경찰은 소년과 부모에게 소년의 행위가 용인할 수 없는 행위로 주지시키고 필요하다면 지역사회에 적당한 봉사기관에 송치한다. 소년이 17세가 되면 소년과 부모는 소년지원반의 비행기록이 과거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된다. 따라서 소년지원반은 인테이크의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조직 및 인력

미국의 모든 도시경찰은 경찰조직의 규모, 경찰조직이 위치한 지역의 종류,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과 질에 따라 소년경찰이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다.

소규모 도시경찰은 1명의 전문가를 두어 소년경찰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곳도 있고 대규모 도시경찰은 관할구역내에서 경찰간부의 책임아래 특별부서를 설치하여 소년경찰활동을 하고 있으며 소년경찰인력도 1명에서 12명까지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다.⁶⁾

대규모 도시경찰인 시카고 경찰국의 경우 사회관계부, 형사부, 운용부, 감찰부, 관리부가 있으나 소년업무는 형사부내에 소년과가 담당하고 있다.

L.A. 경찰국의 경우는 경찰국장 산하의 운용부장하에 본부직할대가 있고 본부직할대는 제복부서와 수사부서로 편성되어 있다. 제복부서는 교통지원과, 전략기획과, 항공지원과, 도심과, 통신과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부서는 수사분석과, 본부수사과, 수사지원과, 강도살인과, 도범과, 소년과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볼티모어시 경찰국의 경우 운용부 산하의 지역대책과의 소속으로 소년과가 설치되어 있고 샌프란시스코시 경찰국의 경우 운용부, 형사부, 지원업무부, 관리부가 있는데 소년과는 형사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오하이오주 콜롬버스시 경찰국의 경우 관리부, 업무부, 운용부, 수사부가 있는데 소년과는 수사부에 소속되어 있다. 또한 미조리주 세인트루이스시 경찰국은 운용부, 형사부, 업무부, 감찰부가 있는데 소년과는 운용부에 소속되어 있다.

콜로라도주 덴버시경찰국은 순찰부, 형사부, 소년부, 교통부, 기술부, 관리부가

6) Peter C. Kratcoski · Lucille Dunn Kratcoski, *Juvenile Delinquency*(N.J.: Prentice Hall, Inc., 1979), p. 201.

있고 소년부에는 비행방지과, 수사과, 자동차철도과가 설치되어 있어 다른 경찰국의 소년경찰 조직보다 그 규모가 크다는 데 특징이 있다.

워싱턴 D. C.경찰국의 경우 운용부, 관리부, 기술부, 감찰부가 있는데 소년과는 운용부에 소속되어 있다. 소년과(Youth Division)는 복지범죄를 포함하여 소년관계사건을 처리하고 소년비행방지를 임무로 하며 78명의 경찰관에 의하여 구성되고 운용반, 관리반, 비행방지반으로 구분된다.

운용반은 소년범죄자의 체포, 소년비행의 방지, 소년범죄자의 처리, 유해환경지역의 감시, 소년비행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평가, 폭주족의 단속, 실종자의 수색 등을 임무로 하고 있고 관리반은 소년비행실태를 추적, 분석하여 소년새관의 결과를 통계로 작성하고 있고 비행방지반은 시의 레크리에이션국과 협력하여 소년의 건전육성활동, 비행방지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경찰소년클럽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미국도시의 소년경찰은 지역사회관계, 경찰체육연맹(PAL), 약물남용극복교육(DARE, Drug Abuse Resistance Education) 등 비행예방업무와 소년법원송치업무, 경찰·학교연락업무, 조사업무, 갱통제업무 등 범집행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인력면에서 보면 소년경찰은 다른 부서의 경찰과는 차별성이 있어 소년비행예방과 소년선도에 특수한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있고 순찰경찰의 경험이 있는 경찰로 하여금 소년경찰에 배치하고 있다.⁷⁾

국제경찰장협의회 조사에 의하면 1960년에 1,400여개의 경찰조직중에서 500여개의 조직에서 소년부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으나 1970년에는 소년경찰부서는 1,000여개를 운영하고 있어 2배로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⁸⁾

7) Larry J. Siegel·Joseph J. Senna, Juvenile Delinquency(St. Paul: West Publishing Co., 1994), p. 481.

8) 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Criminal Justice Standard and Goals, Task Force Report on Juvenile Justice and Juvenile Delinquency(Washington, D.C.:Law Enforcement Assistance Administration,1976), p.245.

다. 운용

미국의 소년경찰은 소년사건업무 처리기준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경찰내에서 소년경찰에 대한 근절감시와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무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지 않아 소년에 대한 원조제공, 상담, 오락활동, 소년경찰과 순찰경찰과의 관계 등의 사안은 소년경찰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샌디에이고시 경찰국 소년과는 이러한 소년경찰의 재량을 통제하기 위하여 소년관련사건에 대한 명시적인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① 소년과 관련된 모든 범죄사건의 수사 ② 학교, 오락시설, 아동보호센터 강도의 수사 ③ 소년비행에 책임있는 성인의 처리 ④ 유기되고 방치된 소년 ⑤ 구타당한 아동피해자의 조사 ⑥ 실종 및 가출소년의 수색과 그들의 적정한 기록 유지 ⑦ 소년범죄자의 송치 및 적당한 처리 ⑧ 자전거 등록업무 및 제한된 자전거 면허업무 ⑨ 10대전용 댄스교습소의 감독과 규제 ⑩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비행통제·예방프로그램의 제공 ⑪ 지역사회 위험요인의 발견 및 제거 ⑫ 도난자전거의 회수 ⑬ 우범지역의 감시 ⑭ 보호자와 소년에 대한 상담 등이다.

소년경찰이 사건에 개입하는 시기는 각 경찰조직의 정책에 따라 다르다. 어떤 조직은 소년경찰이 발견한 모든 소년을 소년과로 동행하는 반면에 어떤 조직은 순찰경찰이 비행소년을 발견하여 그들의 재량권을 행사하여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만 소년과에 이송한다. 또 다른 처리절차는 순찰경찰로 하여금 지역사회에서 소년과 접촉케 하고 소년이 경찰서에 출두하였을 때 소년경찰에 인계된다. 소년을 인계받은 소년경찰은 범죄의 성질, 소년의 비행력 등을 고려하여 신병구속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년을 석방하여 부모, 후견인 기타 수탁자에게 인계한다. 이러한 경우 수일 이내에 법원에 출두하도록 지시를 한다. 또한 소년경찰은 발견한 소년을 재판외의 처리절차에 회부하여 청소년봉사국에 위탁하여 봉사활동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소년을 소년법원에 송치하기까지 그 신병을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소년을 아동상담소에 위탁하여 수용하고 있다.

라. 예방 및 선도 프로그램

미국의 청소년비행예방 및 선도프로그램은 경찰에 의한 소년의 낙인화를 방지하고 소년을 보호하려는 지역사회의 인식을 제고시키며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비행문제의 복잡성을 알려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공적 책임감과 지원을 확보하고 나아가 비행소년에 대한 경찰의 법원송치를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경찰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1) 경찰-학교연락관 프로그램(Police-School Liaison Program)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 학교 등과의 청소년비행 예방 및 선도를 위하여 각 경찰서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관을 임명하여 학교, 지역사회, 경찰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학교, 사회단체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및 범죄대응방법을 홍보하려는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① 소년비행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과 학교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 ② 경찰과 청소년과의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것 ③ 학교교사와 협력하여 청소년비행 예방 및 선도를 행하는 것 ④ 경찰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를 개선하는 것 ⑤ 경찰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지역주민과 관계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 등이다.

2) 경찰-성직자 연대프로그램(Police-Clergy Program)

경찰과 성직자가 연대하여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성직자의 공공성과 시민에 대한 친화력을 활용하려는 것이다. 특히 경찰과 성직자가 합동으로 순찰활동에 참여하여 시민의 어려움을 귀담아 듣고 경찰에 대한 시민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성직자도 경찰과 같이 순찰도중에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대처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효과적인 순찰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3) 소년순찰보조프로그램(TOP, Teens on Patrol)

이 프로그램은 뉴욕주 로체스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매년 하계휴가기간에 100여명의 소년들이 도시의 공원이나 오락시설을 순찰하기 위하여 고용된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지역의 지리도 파악할 수 있고 경찰업무에 대하여도 많은 내용을 알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많은 소년들이 직업경찰로 진출한다고 한다.

4) 경찰체육연맹(PAL, Police Athletic League)

경찰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비행을 예방하고 선도하기 위하여 시간과 정력이 넘치는 청소년들에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비행의 기회를 줄이자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운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은 경찰과 친밀하게 접촉하게 되고 경찰의 역할을 이해하게 되며 경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 또한 친구를 사귀게 되고 교사, 코치, 경찰 등과 교제를 함으로써 긍정적인 인성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운동을 통한 성취감과 책임감을 느껴서 결국에는 책임있는 자아관을 가져서 비행에 물들지 않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1973년 뉴멕시코 경찰주관의 경찰체육연맹인데 여기서는 지역사회의 시민, 기업체 등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권투, 레슬링, 체조, 테니스, 체스, 자동차경주 등 다양한 운동을 통하여 청소년을 선도하고 있다.

5) 경찰업무 보조프로그램(Youth - Crop Program)

이 프로그램은 소년들에게 경찰이나 소방관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내용을 교육한 후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년들은 화재예방, 미아찾기, 교통정리, 공원 등에서 안내, 학교와 유흥업소밀집지역의 순찰, 도난차량 파악, 기타 지역사회에 활동에 참여한다.

6) 안전한 거리만들기 프로그램(Safe Street Unit Project)

이 프로그램은 소년비행의 예방, 지역사회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개선, 가정문

제에 대한 상담, 기타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하는 활동을 경찰과 같이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실시된다.

7) 지역사회봉사관(Community Service Officer)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경찰업무 보조프로그램으로서 지역사회의 범죄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경찰활동을 보조하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17세-21세인 청소년들로 구성되고 이들은 경찰과 시민과의 의사교환을 돕고 시민의 불평을 파악하며 화재 등의 긴급사태를 지원하고 절도, 폭력 등의 수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행하고 있다.

8) 청소년전문가제도(Juvenile Specialists)

소년비행의 예방과 비행소년의 교정에 목적을 두고 청소년비행을 줄이려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전문가는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과정을 이해하여 청소년의 문화와 행태를 사전에 파악하여 때로는 경찰의 역할도 수행하고 학교, 교회, 사업체 등을 방문하여 소년비행에 대한 상담을 수행하고 경찰과 협력하여 유흥가, 오락시설 등 청소년유해환경을 경찰과 합동으로 순찰하면서 청소년을 선도하고 있다.

마.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1) 학교

학교는 효과적인 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경찰과 협력하여 각종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소년클럽은 소년들에게 가정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대한 회피요령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경찰은 학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몇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약물남용극복교육(DARE)은 경찰이 초등학생들에게 동급생의 약물사용의 압력에 저항하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서 실제로 이러한 교육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생들은 경찰을 지식이 풍부하고 지역사회에서 이해심이 많은 존재로 인식하고 초등학생 자신들은 자신감 획득, 스트레스 관리, 동급생 압력에 대한 저항 및 반폭력과 적극적인 자기존중훈련을 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범죄방어교육(Crime Resistance Education)은 경찰과 학교의 사회과 교사가 공동으로 「십대, 범죄, 그리고 지역사회」(Teens, Crime, and Community)라는 교재를 개발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범죄실태 및 범죄피해예방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셋째, 경찰과 교사는 총기안전과 폭력예방을 내용으로 하는 「위험상황대피요령」(STAR, Straight Talk about Risk)이라는 교재를 개발하여 교육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경찰과 학교는 서로 협력하여 학생들의 약물사용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지역사회

미국은 시민들에게 그들의 가정과 이웃을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구역감시(Block Watch)라는 지역사회에 기초한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각 도시내에서 물리적으로 열악한 환경으로 열병을 앓았던 도심의 근린지역이 범죄와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이런 지역은 폐차장, 입주하지 않은 노후된 빌딩, 부서진 가로등, 쓰레기가 흩날리는 공원 등이다. 많은 도시에서 근린환경의 악화와 범죄와의 상관성을 인정하게 되었고 각 도시와 경찰이 협력하여 이런 지역을 정화하여 우범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IV. 우리나라 소년경찰의 실태분석

1. 조사방법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비행 통제를 위한 소년경찰의 대책을 강구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태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태분석을 위해서 소년비행이 비교적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3개 경찰서(서울 북부, 수원 중부, 여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소년계장 및 직원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조사는 전국의 대도시, 중소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61개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소년계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289부를 배포하였으나 최종수집된 자료는 전국의 51개경찰서 249부가 회수되었다. 각 지역별 설문지 배포인원과 회수인원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9〉 조 사 대 상

지 역	대상경찰서	배포	회수	비고(미회수)
서울	16	115	107	8
부산	5	34	27	7
대구	4	22	22	0
인천	4	20	20	0
경기	7	23	20	3
강원	3	9	5	4
충북	3	11	11	0
충남	3	11	11	0
전북	3	12	0	12
전남	4	11	9	2
경북	4	7	3	4
경남	4	10	10	0
제주	1	4	4	0
총계	61	289	249	40

조사기간은 1996년 9월 5일부터 1996년 9월 20일까지 실시하였고 자료수집방법은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①소년경찰의 조직 ②소년경찰의 인사행정 ③ 소년경찰의 운용 ④ 소년경찰의 예방 및 선도프로그램 ⑤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조사자료는 SAS Package를 이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을 위주로 통계처리하였고 미싱으로 나타난 인원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20〉에서 조사대상자의 각 변인별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 보면 남자가 86.6%, 여자가 13.4%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 소년계내의 소속에 대해서는 수사반이 51.9%, 지도반이 25.3%, 구분되지 않은 비율이 22.8%를 보이고 있다.

계급별로 보면 순경이 7.1%, 경장이 38.5%, 경사가 42.3%, 경위 이상이 12.1%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별로 보면 20-29세가 4.6%, 30-39세가 29.4%, 40-49세가 46.6%, 50세 이상이 19.3%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학력별로 보면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60.9%, 전문대학 중퇴 및 졸업이 18.7%, 대학교 중퇴 및 졸업이 19.6%, 대학원 중퇴 및 졸업 이상이 0.9%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 결혼상태별로 보면 기혼이 94.1%, 미혼이 5.9%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자녀수별로 보면 1명이 12.6%, 2명이 61.9%, 3명이 22.0%, 4명 이상이 3.6%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성장지역별로 보면 대도시지역이 15.6%, 중소도시지역이 19.4%, 군지역이 11.4%, 읍면지역이 53.6%를 나타내고 있으며 소속 경찰서의 급지는 1급지가 84.0%, 2급지가 7.6%, 3급지가 8.4%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경찰근무경력을 보면 5년미만이 4.6%, 5-10년 미만이 15.6%, 10-15년 미만이 20.3%, 15-20년 미만이 30.8%, 20년 이상이 28.7%를 나타내고 있다.

소년계에서 근무한 기간별로 보면 1년 미만이 56.4%, 1년-3년 미만이 31.4%, 3년-5년미만이 10.2%, 5년-7년 미만이 1.7%, 7년 이상이 0.4%의 분포를 보이

조사기간은 1996년 9월 5일부터 1996년 9월 20일까지 실시하였고 자료수집방법은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①소년경찰의 조직 ②소년경찰의 인사행정 ③ 소년경찰의 운용 ④ 소년경찰의 예방 및 선도프로그램 ⑤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조사자료는 SAS Package를 이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을 위주로 통계처리하였고 미싱으로 나타난 인원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20〉에서 조사대상자의 각 변인별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 보면 남자가 86.6%, 여자가 13.4%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 소년계내의 소속에 대해서는 수사반이 51.9%, 지도반이 25.3%, 구분되지 않은 비율이 22.8%를 보이고 있다.

계급별로 보면 순경이 7.1%, 경장이 38.5%, 경사가 42.3%, 경위 이상이 12.1%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별로 보면 20-29세가 4.6%, 30-39세가 29.4%, 40-49세가 46.6%, 50세 이상이 19.3%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학력별로 보면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60.9%, 전문대학 중퇴 및 졸업이 18.7%, 대학교 중퇴 및 졸업이 19.6%, 대학원 중퇴 및 졸업 이상이 0.9%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 결혼상태별로 보면 기혼이 94.1%, 미혼이 5.9%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자녀수별로 보면 1명이 12.6%, 2명이 61.9%, 3명이 22.0%, 4명 이상이 3.6%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성장지역별로 보면 대도시지역이 15.6%, 중소도시지역이 19.4%, 군지역이 11.4%, 읍면지역이 53.6%를 나타내고 있으며 소속 경찰서의 급지는 1급지가 84.0%, 2급지가 7.6%, 3급지가 8.4%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경찰근무경력을 보면 5년미만이 4.6%, 5-10년 미만이 15.6%, 10-15년 미만이 20.3%, 15-20년 미만이 30.8%, 20년 이상이 28.7%를 나타내고 있다.

소년계에서 근무한 기간별로 보면 1년 미만이 56.4%, 1년-3년 미만이 31.4%, 3년-5년미만이 10.2%, 5년-7년 미만이 1.7%, 7년 이상이 0.4%의 분포를 보이

〈표 20〉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인 별	구 분	빈 도 (%)
성 별	남 자	207(86.6)
	여 자	32(13.4)
계		239(100)
소년계내의 소속	수사반	123(51.9)
	지도반	60(25.3)
	구분되지 않음	54(22.8)
계		237(100)
계 급	순 경	17(7.1)
	경 장	92(38.5)
	경 사	101(42.3)
	경위이상	29(12.1)
계		239(100)
연 령	20-29세	11(4.6)
	30-39세	70(29.4)
	40-49세	111(46.6)
	50세 이상	46(19.3)
계		238(100)
학 력	고등학교 졸업이하	143(60.9)
	전문대학 중퇴 및 졸업	44(18.7)
	대학교 중퇴 및 졸업	46(19.6)
	대학원 중퇴 및 졸업 이상	2(0.9)
계		235(100)
결혼상태	기 혼	224(94.1)
	미 혼	14(5.9)
계		238(100)

자녀수	1명	28(12.6)
	2명	138(61.9)
	3명	49(22.0)
	4명 이상	8(3.6)
계		223
성장지역	대도시지역	37(15.6)
	중소도시지역	46(19.4)
	군지역	27(11.4)
	읍면지역	127(53.6)
계		237(100)
소속 경찰서의 급지	1급지	200(84.0)
	2급지	18(7.6)
	3급지	20(8.4)
계		238(100)
경찰근무경력	5년 미만	11(4.6)
	5-10년 미만	37(15.6)
	10-15년 미만	48(20.3)
	15-20년 미만	73(30.8)
	20년 이상	68(28.7)
계		237(100)
소년계에서 근무한 기간	1년 미만	133(56.4)
	1년-3년 미만	74(31.4)
	3년-5년 미만	24(10.2)
	5년-7년 미만	4(1.7)
	7년 이상	1(0.4)
계		236(100)
방법(소년경찰) 직무교육 이수기간	받은적 없음	183(77.5)
	3월 미만	41(17.4)
	3-6월 미만	5(2.1)
	6-9월 미만	3(1.3)
	9-11년 미만	4(1.7)
계		236(100)

고 있고 방법(소년경찰)직무교육 이수기간별로 보면 받은 적이 없는 비율이 77.5%, 3월미만이 17.4%, 3-6월 미만이 2.1%, 6-9월 미만이 1.3%, 9월-1년 미만이 1.7%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3. 우리나라 소년경찰의 실태분석

가. 조 직

1) 소년경찰 조직의 적절성 여부

〈표 21〉 조직규모의 적절성 여부

조직규모의 적절성 여부	빈 도
매우 적절하다	8 (3.3)
적절한 편이다	38(15.7)
그저 그렇다.	38(15.7)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127(52.5)
매우 적절하지 않다.	31(12.8)
합 계	242(100)

소년경찰의 조직규모의 적절성여부에 대하여 보면 전체 응답자 242명 중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65.3%,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9%로 나타나 소년경찰의 조직규모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직규모의 개선방향

이러한 부적절한 소년경찰의 조직규모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 158명 중에서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0%이상을 점하고 있는 반면에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에 불과해 현재의 소년계나 소년반을 확대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고 있고 방법(소년경찰)직무교육 이수기간별로 보면 받은 적이 없는 비율이 77.5%, 3월미만이 17.4%, 3-6월 미만이 2.1%, 6-9월 미만이 1.3%, 9월-1년 미만이 1.7%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3. 우리나라 소년경찰의 실태분석

가. 조 직

1) 소년경찰 조직의 적절성 여부

〈표 21〉 조직규모의 적절성 여부

조직규모의 적절성 여부	빈 도
매우 적절하다	8 (3.3)
적절한 편이다	38(15.7)
그저 그렇다.	38(15.7)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127(52.5)
매우 적절하지 않다.	31(12.8)
합 계	242(100)

소년경찰의 조직규모의 적절성여부에 대하여 보면 전체 응답자 242명 중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65.3%,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9%로 나타나 소년경찰의 조직규모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직규모의 개선방향

이러한 부적절한 소년경찰의 조직규모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 158명 중에서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0%이상을 점하고 있는 반면에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에 불과해 현재의 소년계나 소년반을 확대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2〉 조직규모의 개선방향

조직규모의 개선방향	빈 도
① 계단위에서 과단위로 확대개편해야 한다.	33(20.9)
② 계단위와 과단위의 중간단위로 확대개편해야 한다.	99(62.7)
③ 현행규모가 적정하다.	18(11.4)
④ 계단위보다 축소해야 한다.	5(3.1)
⑤ 경찰관 1인을 지정하여 소년업무를 담당하도록 축소해야 한다	3(1.9)
합 계	158(100)

3) 소년계의 명칭변경 동의여부

소년계의 명칭변경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동의한다는 응답이 54.8%인데 반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8.0%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의 소년계나 소년반이라는 명칭보다 다른 명칭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 소년계의 명칭변경 동의여부

소년계의 명칭변경 여부	빈 도
매우 동의한다.	33(13.9)
동의하는 편이다.	97(40.9)
모르겠다.	17(7.2)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81(34.2)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9(3.8)
합 계	237(100)

4) 소년계의 변경명칭

소년계의 명칭을 변경한다면 어떤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응답자 130명 중에서 소년선도계가 43.8%, 소년조사계가 22.3%의 순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현재의 소년계가 지도반과 수사반으로 구분되어 있어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분석된다.

〈표 24〉 소년계의 변경명칭

소년계의 변경명칭	빈 도
① 소년보호계	12(9.2)
② 소년상담계	11(8.5)
③ 소년보도계	10(7.7)
④ 소년선도계	57(43.8)
⑤ 소년조사계	29(22.3)
⑥ 기 타	11(8.5)
합 계	130(100)

5) 수사반과 지도반 구분 여부

〈표 25〉 수사반과 지도반 구분 여부

수사반과 지도반 구분 여부	빈 도
① 구분하는 것이 좋다.	148(61.7)
② 통합하는 것이 좋다.	85(35.4)
③ 모르겠다.	7(2.9)
합 계	240(100)

소년계의 수사반과 지도반의 구분여부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240명 중에서 구분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61.7%인 반면에 통합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인원은 35.4%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구분운영이 좋은 것으로 분석된다.

6) 소년사건의 형사과(수사과)와 소년계의 업무분담

소년사건의 형사과(수사과)와 소년계의 업무분담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238명 중에서 현행체도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39.5%로 가장 많고 범죄소년사건은

형사과(수사과)에서 담당하고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은 소년계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8.2%, 그리고 모든 소년사건은 소년계(소년반)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비율은 22.3%로 나타나고 있어 대체적으로 소년사건은 형사과(수사과)에서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6〉 소년사건의 형사과(수사과)와 소년계의 업무분담

소년사건의 형사과(수사과)와 소년계의 업무분담	빈도
① 모든 소년사건은 소년계(소년반)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53(22.3)
② 현행제도가 좋다.	94(39.5)
③ 범죄소년사건은 형사과(수사과)에서,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사건만 소년계에서 담당	91(38.2)
합 계	238(100)

우리나라에서는 날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소년비행을 처벌위주로 처리하는 것보다 건전한 육성을 위한 선도차원에서 대처하기 위해 20세 미만의 비행소년을 소년계(소년반)내의 소년범죄 수사전담반에서 처리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수사전담요원의 자격으로서 수사·형사경과 소지자로서 경험있는 자나 수사·형사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방법과장 또는 소년계장이 인정한 자를 요건으로 하고 편성규모는 경찰청은 4명, 서울지방경찰청은 소년계 3명, 각 시도 지방경찰청은 2명으로 하고 경찰서의 경우 서울시내 각 경찰서는 6명, 도청소재지 경찰서는 4명, 시소재지 경찰서는 2명, 기타 경찰서는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업무범위는 ① 청소년의 지도 및 보호 ② 청소년 선도대책 업무 ③ 청소년 유해환경의 단속 ④ 소년보호 및 상담 ⑤ 소년범죄 자료 수집 및 분석 ⑥ 소년범죄수사 ⑦ 미성년자가 피의자인 고소, 고발사건 ⑧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인지사건 수사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전담반에서 처리하지 않고 경찰서내의 수사기능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

- ①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사건 ② 마약, 밀수관련사건 ③ 특수폭행사건 ④ 절도, 폭력범은 전과 3범 이상 ⑤ 성인과 미성년자가 관련된 동일 사건 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⑦ 도로교통법위반사건 ⑧ 보안 및 정보 사건 ⑨ 소재수사 및 기소중지사범의 수배 및 검거 동행 ⑩ 수사본부 설치운영을 요하는 중요사건 ⑪ 소년범죄 발생 및 신고사건의 초동수사 등은 제외된다.

그러나 소년경찰직무규칙(1993.6.22, 경찰청예규 101호)제 49조 2항에서 수사 과정에서 범죄소년을 조사, 처리하는 신상조사표를 작성 소년계(반)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소년경찰은 조기발견, 조기처우라는 소년보호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른 형사사법기관과는 달리 전문적인 발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7) 성폭력범죄의 상담 및 예방활동의 소년계 취급여부

성폭력범죄의 상담 및 예방활동의 소년계 취급여부에 대하여 전체 239명의 응답자 중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42.6%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54.4%로 나타나 성폭력범죄의 상담 및 예방업무는 과반수 이상의 소년경찰이 소년계에서 취급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성폭력범죄의 상담 및 예방활동의 소년계 취급여부

성폭력범죄의 상담 및 예방업무의 소년계 취급여부	빈 도
① 매우 동의한다.	24(10.0)
② 동의하는 편이다.	78(32.6)
③ 모르겠다.	7(2.9)
④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86(36.0)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4(18.4)
합 계	239(100)

나. 인사행정

1) 직원수의 적정여부

소년계 직원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전체 244명의 응답자 중에서 부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8.6%,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3.9%를 나타내 소년경찰의 인원수가 매우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 이상의 소년경찰이 2-8명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나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8〉 직원수의 적정여부

직원수의 적정여부	빈 도
① 매우 적정하다.	2(0.8)
② 적정한 편이다.	32(13.1)
③ 그저 그렇다.	18(7.4)
④ 부적정한 편이다.	127(52.0)
⑤ 매우 부적정하다.	65(26.6)
합 계	244(100)

2) 소년경찰의 채용방식

〈표 29〉 소년경찰의 채용방식

소년경찰의 채용방식	빈 도
① 특채모집	5(2.1)
② 공채모집	29(12.0)
③ 현직경찰을 전문화교육을 이수한 후 재배치	193(80.1)
④ 기타()	14(5.8)
합 계	241(100)

소년경찰의 채용방식에 대하여 현직경찰을 전문화교육을 이수한 후 재배치하는 것이 80.1%를 나타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공채모집이 12.0%, 기타가 5.8%, 특채모집이 2.1%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소년경찰의 대부분은 수사연수소 교육과정과 같이 현직경찰을 소년경찰 전문화교육을 이수한 후 소년경찰에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3) 소년경찰의 전문화과정 교육의 필요성

〈표 30〉 소년경찰의 전문화과정 교육의 필요성

소년경찰의 전문화과정 교육의 필요성	빈 도
① 매우 인정한다.	80(32.8)
② 인정하는 편이다.	114(46.7)
③ 그저 그렇다.	20(8.2)
④ 인정하지 않는 편이다.	25(10.2)
⑤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5(2.0)
합 계	244(100)

소년경찰전문화과정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전체응답자 244명 중에서 인정하는 비율이 79.5%, 인정하지 않는 비율이 12.2%를 나타내고 있어 대다수의 인원이 소년경찰전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전문화과정의 교육기관

소년경찰전문화과정교육을 신설한다면 그 교육기관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194명 중에서 외부의 청소년단체의 청소년지도자과정 교육위탁이 63.4%로 가장 많고 경찰수사연구소가 17.0%, 경찰종합학교가 14.4%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반수 이상의 소년경찰은 전문화교육을 외부 청소년단체의 청소년지도자 교육 과정에 위탁 실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표 31〉 전문화과정의 교육기관

전문화과정의 교육기관	빈 도
① 외부의 청소년단체의 청소년지도자과정 교육위탁	123(63.4)
② 경찰종합학교	28(14.4)
③ 중앙경찰학교	3(1.6)
④ 경찰수사연구소	33(17.0)
⑤ 기타()	7(3.6)
합 계	194(100)

5) 전문화과정의 교육내용

소년경찰전문화과정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166명 중에서 소년비행론이 40.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심리학, 교육학 사회병리학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2〉 전문화과정의 교육내용

전문화과정의 교육내용	빈도
① 심리학	42(25.3)
② 교육학	25(15.1)
③ 정신의학	5(3.0)
④ 소년비행론	67(40.4)
⑤ 사회병리학	16(9.6)
⑥ 형사법	7(4.2)
⑦ 기타 ()	4(2.4)
합 계	166(100)

6) 전문화과정의 교육기간

소년경찰전문화과정의 교육기간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194 중에서 3-4주가 49.5%로 가장 많고 1-2주가 26.8%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으며 5-6주가 15.5%, 7-8주가 5.6%의 순으로 나타내고 있다.

〈표 33〉 전문화과정의 교육기간

전문화과정의 교육기간	빈도
① 1-2주	52(26.8)
② 3-4주	96(49.5)
③ 5-6주	30(15.5)
④ 7-8주	11(5.6)
⑤ 9주 이상	5(2.6)
합 계	194(100)

다. 운 용

1) 소년경찰 직무규칙의 개정 필요성

소년경찰 직무규칙의 개정필요성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비율이 77.3%를 차지하는 반면에 인정하지 않는 비율이 6.8%를 차지하고 있어 소년경찰직무규칙의 개정필요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소년경찰 직무규칙의 개정 필요성

소년경찰 직무규칙의 개정 필요성	빈 도
① 매우 인정한다.	55(23.1)
② 인정하는 편이다.	129(54.2)
③ 그저 그렇다.	38(16.0)
④ 인정하지 않는 편이다.	13(5.5)
⑤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3(1.3)
합 계	238(100)

2) 비행소년의 처리방법

〈표 35〉 비행소년의 처리방법

비행소년의 처리방법	빈 도
① 매우 선도위주로 처리한다.	24(9.9)
② 선도위주로 처리하는 편이다.	128(52.7)
③ 모르겠다.	7(2.9)
④ 선도위주로 처리하지 않는 편이다.	58(23.9)
⑤ 전혀 선도위주로 처리하지 않는다.	26(10.7)
합 계	243(100)

비행소년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선도위주로 처리한다는 비율이 62.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선도위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34.6%를 차지하고 있

어 대체적으로 선도위주로 비행소년을 처리하고 있으나 처벌위주로 비행소년을 처리하는 비율도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처벌위주로 되어있는 소년법, 소년경찰직무규칙 등이 소년경찰로 하여금 선도위주로 처리하도록 현재보다 완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3) 비행소년의 상담방법

〈표 36〉 비행소년의 상담방법

비행소년의 상담방법	빈 도
① 직접 상담한다	189(85.9)
② 외부의 청소년단체에 상담을 의뢰한다.	31(14.1)
합계	220(100)

비행소년의 상담방법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220명 중에서 직접상담하는 경우는 85.9%, 외부의 청소년단체에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도 14.1%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지도를 담당하는 직원이 배치되지 않는 경찰서의 경우에 외부의 청소년단체에 상담을 의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4) 직접상담 대상소년

〈표 37〉 직접상담 대상소년

직접상담내용	빈 도
① 범죄소년	83(47.2)
② 축범소년	22(12.5)
③ 우범소년	18(10.2)
④ 불량행위소년	25(14.2)
⑤ 요보호소년	2(1.1)
⑥ 가출자	21(11.9)
⑦ 재비행자	5(2.8)
합 계	176(100)

직접상담하는 대상소년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176명 중에서 범죄소년이 47.2%로 가장 많고 불량행위소년이 14.2%, 촉법소년이 12.5%, 가출자 11.9%, 우범소년이 10.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비행자도 2.8%, 요보호소년도 1.1%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범죄소년을 위주로 직접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5) 비행소년에 대한 직접상담내용

〈표 38〉 비행소년에 대한 직접상담내용

직접상담내용	빈 도
① 이성 및 건강문제	3(1.9)
② 교우관계	20(12.9)
③ 학교문제	12(7.7)
④ 비행문제	101(65.2)
⑤ 가정문제	13(8.4)
⑥ 범죄피해	2(1.3)
⑦ 기타	4(2.6)
합 계	155(100)

소년경찰과 직접 상담하는 내용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155명 중에서 비행문제가 65.2%로 가장 많고 교우관계가 12.9%, 가정문제가 8.4%, 학교문제가 7.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비행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교우관계, 가정문제, 학교문제 등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환경도 비행소년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비행소년 보호자에 대한 상담내용

비행소년의 보호자에 대한 상담내용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200명 중에서 가정문제가 41.5%로 가장 많고, 비행문제가 26.5%, 가출문제가 19.0%, 기타가 5.0%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행소년 보호자에 대한 상담내용이 가정문제가 많은 것은 보호자가 소년의 감독 및 훈육방법이 미숙해서 이를 상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39〉 비행소년 보호자에 대한 상담내용

비행소년 보호자에 대한 상담내용	빈 도
① 비행문제	53(26.5)
② 가출문제	38(19.0)
③ 가정문제	83(41.5)
④ 교우관계	9(4.5)
⑤ 학교문제	5(2.5)
⑥ 성·건강문제	2(1.0)
⑦ 기타()	10(5.0)
합 계	200(100)

7) 가두보도활동 빈도

〈표 40〉 가두보도활동 빈도

가두보도활동 빈도	빈 도
① 수시	82(35.8)
② 1주일에 1회 정도	7(3.1)
③ 2주에 1회 정도	41(17.9)
④ 1월에 1회 정도	31(14.8)
⑤ 3월에 1회 정도	22(9.6)
⑥ 6월에 1회 정도	43(18.8)
합 계	237(100)

가두보도란 흥행장, 유기장, 풍속영업소, 변화가, 연, 공원, 유원지, 기타 청소년 비행이 빈발하는 장소에서 음주, 깃연, 싸움, 유해영화나 쇼 등의 관람, 부녀자회 통, 불량집단조직, 폭행, 불순이성교우, 퇴학, 무단결석, 기타 비행할 우려가 있는 불량행위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주의, 조언, 경고, 제지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범행, 기타 비행화를 미연에 방지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두보도활동에는 월 1회 이상 지도만을 편성하여 소년담당자 및 방법경찰 1

명씩을 배치하는 정기가두보도와 경찰관 및 청소년지도위원이 시간과 장소에 구분없이 일상적인 공사생활을 통하여 비행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선도하는 일상가두보도로 구분된다.

이러한 소년경찰의 가두보도활동의 빈도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237명 중에서 수시로 행하는 비율은 35.8%로 가장 많고 6월에 1회 정도가 18.8%, 2주에 1회 정도가 17.9%, 1월에 1회정도가 14.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두보도활동은 수시로 행하는 일상가두보도활동을 통하여 불량행위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청소년비행방지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8) 유해업소의 단속내용

〈표 41〉 유해업소의 단속내용

유해업소의 단속내용	빈 도
① 미성년자 고용	15(7.0)
② 미성년자 주류제공	123(57.2)
③ 남녀혼숙	4(1.9)
④ 시간외영업	52(24.2)
⑤ 불량만화및 음란비디오 상영	4(1.9)
⑥ 도박 및 사행행위	2(0.9)
⑦ 기타()	15(7.0)
합 계	215(100)

유해업소의 단속내용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215명 중에서 미성년자 주류제공이 57.2%로 가장 많고, 시간외영업이 24.2%, 미성년자 고용과 기타가 각각 7.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 보호법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및 연초제공의 규정에 따라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성년자에게 대한 담배 등 연초에 대한 판매금지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판매는 아직도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9) 유해소업소의 적발시 업주에 대한조치

〈표 42〉 유해소업소의 적발시 업주에 대한조치

유해소업소의 적발시 업주에 대한 조치	빈 도
① 구속	15(8.0)
② 불구속	133(70.7)
③ 즉결심판	1(0.5)
④ 행정처분	24(12.8)
⑤ 훈방	1(0.5)
⑥ 기타()	14(7.4)
합 계	188(100)

유해업소 적발시 업주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188명 중에서 불구속이 70.7%로 가장 많고 행정처분이 12.8%, 구속이 8.0%, 기타 7.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이 불구속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경찰에서 업주를 처벌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만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행정처분도 처음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월, 두번째 위반시는 영업정지 2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행정처분이 불구속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10) 비행위험성 판정자료의 효과성

〈표 43〉 비행위험성 판정자료의 효과성

비행위험성 판정자료의 효과성	빈 도
① 매우 도움이 된다.	8(3.4)
② 도움이 되는 편이다.	41(17.4)
③ 그저 그렇다	97(41.3)
④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64(27.2)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5(10.6)
합 계	235(100)

비행위험성 판정자료표의 효과성에 대하여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8

%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37.8%를 차지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비행위험성 판정자료표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1) 비행위험성 판정자료의 비효과성 이유

〈표 44〉 비행위험성 판정자료의 비효과성 이유

비행위험성 판정자료의 비효과성 이유	빈도
① 예측방법상의 문제 때문에	11(12.4)
② 예측자료가 현실에 맞지 않아서	50(56.2)
③ 종합판정법의 기준상 문제 때문에	9(10.1)
④ 판정에 따른 처우상의 문제때문에	14(15.7)
⑤ 기타()	5(5.6)
합 계	89(100)

비행위험성 판정자료표의 비효과성의 이유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89명 중에서 예측자료가 현실에 맞지 않아서가 56.2%로 가장 많고, 판정에 따른 처우상의 문제 때문에 15.7%, 예측방법상의 문제 때문에 12.4%, 종합판정법의 기준상의 문제 때문에 10.1%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비행위험성예측자료가 현실에 맞지 않아 비행소년의 예측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촉법소년의 가정법원송치시 동행영장의 발부의 필요성

〈표 45〉 촉법소년의 가정법원송치시 동행영장의 발부의 필요성

촉법소년의 가정법원송치시 동행영장의 발부의 필요성	빈도
① 매우 인정한다.	11(4.6)
② 인정하는 편이다	54(22.8)
③ 그저 그렇다	34(14.3)
④ 인정하지 않는 편이다	92(38.8)
⑤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46(19.4)
합 계	237(100)

촉법소년의 가정법원 송치시 동행영장 발부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정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7.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58.2%를 차지하고 있어 동행영장의 발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이유는 촉법소년의 동행으로 인한 소년경찰의 인력부족과 업무의 과중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라. 비행 예방 및 선도 프로그램

1) 청소년지도위원의 효용성여부

<표 46> 청소년지도위원의 효용성여부

청소년지도위원의 효용성여부	빈 도
①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12(5.1)
② 약간 도움을 주고 있다.	61(25.7)
③ 그저 그렇다.	75(31.6)
④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54(22.8)
⑤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35(14.8)
합 계	237(100)

청소년지도위원의 효용성 여부에 대하여 전체응답자 237명 중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7.6%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31.6%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선도에 다소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2) 청소년지도위원의 비효용성 이유

청소년지도위원의 비효용성 이유에 대하여 상담능력 등 자격상의 문제가 있어서가 49.4%로 가장 많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가 23.6%, 소년과의 세대차이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미흡해서가 13.5%, 경험이 부족해서가 6.8%의 순으로 나타

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청소년선도위원은 상담능력 등 자격상 문제가 있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지역의 유지 및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 청소년선도에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표 47〉 청소년지도위원의 비효용성 이유

청소년지도위원의 비효용성 이유	빈도
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21(23.6)
② 경험이 부족해서	6(6.8)
③ 상담 능력 등 자격상의 문제가 있어서	44(49.4)
④ 소년과의 세대차이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미흡해서	12(13.5)
⑤ 경제력이 없어서	1(1.1)
⑥ 기타()	5(5.6)
합 계	89(100)

3) 청소년지도위원의 연령 분포

〈표 48〉 청소년지도위원의 연령 분포

청소년지도위원의 연령 분포	빈도
① 20대	12(5.2)
② 30대	156(67.8)
③ 40대	59(25.7)
④ 50대	2(0.9)
⑤ 60대	1(0.4)
합 계	230(100)

청소년 지도위원의 연령에 대하여 보면 30대가 67.8%로 가장 많고 40대가 25.7%, 20대가 5.2%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별로 세대차이가 나지 않아 의사소통은 다소 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4) 청소년지도위원들의 직업

〈표 49〉 청소년지도위원들의 직업

청소년지도위원들의 직업	빈도
① 공무원	2(0.9)
② 대학교수 및 교사	2(0.9)
③ 청소년단체 회원	16(6.9)
④ 종교인	0(0.0)
⑤ 지역사회 유지	161(69.7)
⑥ 기타()	50(21.6)
합 계	231(100)

청소년지도위원들의 직업에 대하여 보면 지역사회유지가 69.7%로 가장 많고 자영업자 등 기타가 21.6%, 청소년단체의 회원이 6.9%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청소년지도위원들은 청소년들과 직접 접촉을 하는 서점업자, 문구점업자, 분식점업자 등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과 접촉이 거의 없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5)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

〈표 50〉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	빈도
① 소년소녀가장 돕기	25(12.1)
② 불우아동 자매결연	27(13.1)
③ 가두보도활동	16(7.8)
④ 상담보도활동	19(9.2)
⑤ 장학금 지급	78(37.9)
⑥ 기타	41(19.9)
합 계	206(100)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에 대하여 장학금지급이 37.9%로 가장 많고 기타가 19.9%, 불우아동 자매결연이 13.1%, 소년소녀가장 돕기가 12.1% 등의 순으로 나타

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위원들은 장학금지급등 경제적인 지원 위주로 활동하고 있어 비행소년에 대한 상담보도활동이나 가두보도활동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6) 청소년범죄예방교실의 소년비행예방효과

〈표 51〉 청소년범죄예방교실의 소년비행예방효과

청소년범죄예방교실의 소년비행예방효과	빈 도
① 매우 효과가 있다.	21(9.0)
② 약간 효과가 있다.	59(25.2)
③ 그저 그렇다	86(36.8)
④ 별로 효과가 없다	48(20.5)
⑤ 전혀 효과가 없다	20(8.5)
합 계	234(100)

청소년범죄예방교실의 소년비행예방효과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234명 중에서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2%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9.0%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도 36.8%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범죄예방교실은 소년경찰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기 때문에 자료 준비 등 시간적 여유가 없고 학교의 비협조와 비행소년은 전체 학생 중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보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비행예방효과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생각된다.

7) 청소년범죄예방교실의 비효과성 이유

청소년범죄예방교실의 비효과성 이유에 대하여 응답자 68명 중에서 교육기법이 세련되지 못해서가 47.0%로 가장 많고 학교의 비협조가 30.9%, 학생들의 불성실한 수강태도가 10.3%,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7.4%순으로 나타나

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범죄예방교실은 교관의 교육기법에 1차적인 문제가 있어 청소년 범죄예방교실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2〉 청소년범죄예방교실의 비효과성 이유

청소년범죄예방교실의 비효과성 이유	빈도
①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5(7.4)
② 교육기법이 세련되지 못해서	32(47.0)
③ 학교의 비협조 때문에	21(30.9)
④ 학생들의 불성실한 수강태도 때문에	7(10.3)
⑤ 기타()	3(4.4)
합 계	68(100)

8) 사랑의 교실의 효과성 여부

〈표 53〉 사랑의 교실의 효과성 여부

사랑의교실의 효과성 여부	빈도
① 매우 효과가 있다.	21(9.0)
② 약간 효과가 있다	50(21.4)
③ 그저 그렇다.	79(33.8)
④ 별로 효과가 없다.	58(24.8)
⑤ 전혀 효과가 없다.	26(11.1)
합 계	234(100)

사랑의 교실의 효과성여부에 대하여 전체응답자 234명 중에서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0.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5.9%를 차지하고 있고 그저그렇다고 응답한 비율도 33.8%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사랑의 교실은 다소 비행소년의 선도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사랑의 교실의 비효과성 이유

〈표 54〉 사랑의 교실의 비효과성 이유

사랑의 교실의 비효과성 이유	빈 도
① 법적 근거가 없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21(25.0)
② 경찰과 실시기관과의 협조가 부족해서	6(7.1)
③ 교육프로그램이 빈약해서	15(17.9.)
④ 비행소년 동행 등으로 인한 업무과중 때문에	38(45.2)
⑤ 기타()	4(4.8)
합 계	84(100)

사랑의 교실의 비효과성 이유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84명 중에서 비행소년 동행등으로 인한 업무과중이 45.2%로 가장 많고 법적 근거가 없어 강제성이 없는 경우가 25.0%, 교육프로그램이 빈약한 경우가 17.9%, 경찰과 실시기관과의 협조가 부족한 경우가 7.1%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랑의 교실이 비효과적인 가장 큰 이유는 비행소년동행 등으로 인한 업무과중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0)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의 필요성 여부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의 필요성여부에 대하여 전체응답자 236명 중에서 인정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3.6%인 반면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13.2%를 나타내고 있어 비행소년 선도를 위하여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표 55〉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의 필요성 여부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의 필요성 여부	빈 도
① 매우 인정한다.	76(32.2)
② 약간 인정한다.	74(31.4)
③ 그저 그렇다.	55(23.3)
④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	28(11.9)
⑤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3(1.3)
합 계	236(100)

11)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실시기관

〈표 56〉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실시기관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실시기관	빈도
① 경찰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6(4.0)
② 청소년단체에 위탁해서 실시해야 한다.	100(66.7)
③ 다른 국가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13(8.6)
④ 학교나 직장에서 실시해야 한다.	25(16.7)
⑤ 기타()	6(4.0)
합 계	150(100)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실시기관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해서 실시해야 한다는 비율이 66.7%로 가장 많고 학교나 직장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비율이 16.7%, 보호관찰소 등 다른 국가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비율은 8.6%, 경찰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비율이 4.0%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해서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로 나타나고 있다.

12) 사회봉사프로그램의 대상소년

〈표 57〉 사회봉사프로그램의 대상소년

사회봉사프로그램의 대상소년	빈도
① 모든 비행자를 대상으로 실시	138(69.0)
② 노동을 싫어하는 절도범, 강도범 등을 대상으로 실시	27(13.5)
③ 정신적인 이상성격자인 약물사범,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실시	22(11.0)
④ 기타()	13(6.5)
합 계	200(100)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의 대상소년에 대하여 모든 비행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비율이 69.0%로 가장 많고 노동을 싫어하는 절도범, 강도범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비율이 13.5%, 정신적인 이상성격자인 약물사범, 성폭

력범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비율은 11.0%, 기타가 6.5%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조사결과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모든 비행소년을 대상으로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13)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의 불필요성 이유

〈표 58〉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의 불필요성 이유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의 불필요성 이유	빈 도
①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9(29.0)
②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10(32.3)
③ 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6(19.3)
④ 법적 근거가 없어서	4(12.9)
⑤ 기타()	2(6.5)
합 계	31(100)

사회봉사활동의 불필요성 이유에 대하여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어서가 32.3%로 가장 많고,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가 29.0%, 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가 19.3%, 법적 근거가 없어서가 12.9%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의 불필요성 이유는 관리상의 어려움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4) 청소년통행금지제도의 효용성여부

〈표 59〉 청소년통행금지제도의 효용성여부

청소년통행금지제도의 소년비행예방효용성여부	빈 도
① 매우 도움이 된다.	139(57.9)
② 약간 도움이 된다.	58(24.2)
③ 그저 그렇다.	11(4.6)
④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19(7.9)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3(5.4)
합 계	240(100)

청소년통행금지제도의 소년비행예방 효용성여부에 대하여 전체응답자 240명 중에서 도움이 된다가 82.1%를 차지하는 반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13.%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소년경찰은 청소년통행금지제도가 소년비행예방에 매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15) 비행소년 보호자에 대한 교육방식의 개선필요성

〈표 60〉 비행소년 보호자에 대한 교육방식의 개선필요성

비행소년 보호자에 대한 교육방식의 개선필요성	빈 도
① 매우 인정한다.	132(55.2)
② 약간 인정한다.	76(31.8)
③ 그저 그렇다	15(6.3)
④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	16(6.7)
⑤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0(0.0)
합 계	239(100)

비행소년 보호자에 대한 교육방식의 개선필요성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비율이 86.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6.7%를 나타내 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히 보호자의 자녀교육방식이 현재보다 개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자녀교육방식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보호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예산 및 교육시설 등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6) 중퇴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 여부

중퇴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하여 전체응답자 239명 중에서 인정한다는 비율이 69.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인정하지 않는다가 18.8%를 나타내고 있어서 과반수 이상의 소년경찰이 중퇴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표 61〉 중퇴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 여부

중퇴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 여부	빈도
① 매우 인정한다.	97(40.6)
② 약간 인정한다.	69(28.9)
③ 그저 그렇다	28(11.7)
④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	32(13.4)
⑤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13(5.4)
합계	239(100)

17) 조직범죄집단가입방지를 위한 관리정도

〈표 62〉 조직범죄집단가입방지를 위한 관리정도

조직범죄집단가입방지를 위한 관리정도	빈도
① 매우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1(0.4)
②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편이다.	28(11.7)
③ 그저 그렇다.	68(28.5)
④ 특별히 관리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	108(45.2)
⑤ 전혀 특별히 관리하고 있지 않다.	34(14.2)
합계	239(100)

조직범죄집단 가입방지를 위한 관리정도에 대하여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는 비율이 12.1%를 나타내는 반면에 특별히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비율이 59.4%를 나타내고 있어 비행소년의 관리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8) 보호자에 대한 처벌인정여부

비행소년의 보호자에 대한 처벌인정여부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234명 중에서 인정한다는 비율은 42.7%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41.9%를 나타내고 있어 보호자에 대한 처벌은 긍정도 아닌 부정도 아닌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표 63〉 보호자에 대한 처벌인정여부

보호자에 대한 처벌인정여부	빈도
① 매우 인정한다.	20(8.5)
② 인정하는 편이다.	80(34.2)
③ 그저 그렇다.	36(15.4)
④ 인정하지 않는 편이다.	65(27.8)
⑤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33(14.1)
합계	234(100)

19) 보호자 처벌의 종류

보호자처벌의 종류에 대하여 교육프로그램 수강조치가 85%로 가장 많고 행정처분이 7.0%, 즉결심판 회부가 6.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소년경찰은 비행소년의 보호자에 대하여 소년비행예방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수강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4〉 보호자 처벌의 종류

보호자 처벌의 종류	빈도
① 교육프로그램 수강 조치	85(85.0)
② 즉결심판 회부	6(6.0)
③ 행정처분	7(7.0)
④ 기타()	2(2.0)
합계	100(100)

마. 유관기관과의 협력정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정과의 협조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비율이 63.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갖추어져 있다는 비율은 8.7%를 나타내어 가정과의 협조체제는 매

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5〉 유관기관과의 협력정도

문항	구분	협력정도	빈도
가 정		전혀 그렇지 않다	73(31.6)
		그렇지 않은 편이다	74(32.0)
		그저 그렇다	64(27.7)
		그런 편이다	14(6.1)
		매우 그렇다.	6(2.6)
		합 계	231(100)
학교(교육청 등)		전혀 그렇지 않다	47(19.7)
		그렇지 않은 편이다	49(20.6)
		그저 그렇다	67(28.2)
		그런 편이다	66(27.7)
		매우 그렇다.	9(3.8)
		합 계	238(100)
지역사회(시군구)		전혀 그렇지 않다	55(23.1)
		그렇지 않은 편이다	49(20.6)
		그저 그렇다	74(31.1)
		그런 편이다	52(21.8)
		매우 그렇다.	8(3.4)
		합 계	238(100)
청소년단체		전혀 그렇지 않다	34(14.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6(19.4)
		그저 그렇다	78(32.9)
		그런 편이다	66(27.8)
		매우 그렇다.	13(5.5)
		합 계	237(100)
직 장		전혀 그렇지 않다	67(28.3)
		그렇지 않은 편이다	79(33.3)
		그저 그렇다	61(25.7)
		그런 편이다	26(11.0)
		매우 그렇다.	4(1.7)
		합 계	237(100)

학교(교육청 등)와의 협조체제는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비율이 41.3%를 나타내는 반면에 갖추어져 있다는 비율은 31.5%를 나타내고 있어 학교와 소년경찰과는 협조체제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사회(시군구)와의 협조체제는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비율이 43.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갖추어져 있다는 비율은 25.2%를 나타내어 소년경찰과 지역사회(시군구)와도 다소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단체와의 협조체제는 갖추어져 있지 않다가 33.7%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갖추어져 있다는 비율은 33.3%를 나타내어 긍정도 부정도 아닌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청소년의 직장과의 협조체제는 갖추어져 있지 않다가 61.6%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갖추어져 있다는 비율은 12.7%를 나타내어 소년경찰과 청소년의 직장도 협조체제가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공식적 통제기관 중에서 소년경찰과 협조체제가 가장 잘 구축되어 있는 기관은 청소년단체, 학교(교육청 등), 지역사회(시군구), 청소년직장, 가정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요약 및 문제점

가. 조 직

1) 소년경찰의 조직규모는 적정하지 않아서 이를 계단위와 과단위의 중간단위로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소년계의 명칭도 소년선도계로 변경하는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소년계의 수사반과 지도반의 구분에 대하여는 현재와 같이 구분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소년사건의 형사과(수사과)와 소년계의 업무분담은 현행제도가 좋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 성폭력 범죄의 상담 및 예방활동의 소년계 취급여부는 과반수 이상의 소년경찰이 소년계에서 이를 취급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교육청 등)와의 협조체제는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비율이 41.3%를 나타내는 반면에 갖추어져 있다는 비율은 31.5%를 나타내고 있어 학교와 소년경찰과는 협조체제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사회(시군구)와의 협조체제는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비율이 43.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갖추어져 있다는 비율은 25.2%를 나타내어 소년경찰과 지역사회(시군구)와도 다소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단체와의 협조체제는 갖추어져 있지 않다가 33.7%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갖추어져 있다는 비율은 33.3%를 나타내어 긍정도 부정도 아닌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청소년의 직장과의 협조체제는 갖추어져 있지 않다가 61.6%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갖추어져 있다는 비율은 12.7%를 나타내어 소년경찰과 청소년의 직장에도 협조체제가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공식적 통제기관 중에서 소년경찰과 협조체제가 가장 잘 구축되어 있는 기관은 청소년단체, 학교(교육청 등), 지역사회(시군구), 청소년직장, 가정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요약 및 문제점

가. 조 직

1) 소년경찰의 조직규모는 적정하지 않아서 이를 계단위와 과단위의 중간단위로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소년계의 명칭도 소년선도계로 변경하는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소년계의 수사반과 지도반의 구분에 대하여는 현재와 같이 구분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소년사건의 형사과(수사과)와 소년계의 업무분담은 현행제도가 좋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 성폭력 범죄의 상담 및 예방활동의 소년계 취급여부는 과반수 이상의 소년경찰이 소년계에서 이를 취급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인사행정

1) 소년경찰의 직원수의 매우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소년경찰의 채용방식은 특채 및 공채모집을 할 것이 아니라 현직경찰을 전문화교육을 이수케 한 후 재배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소년경찰 전문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대상자중 약 80%의 소년경찰이 소년경찰전문화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교육기관은 외부의 청소년 단체의 청소년지도과정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희망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소년비행론, 심리학, 교육학 등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문화과정 교육기간은 3-4주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운 용

1) 소년경찰 직무규칙의 개정필요성에 대하여 77.3%가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2) 비행소년의 처리방법에 있어서 주로 선도위주로 처리하고 있으며 상담방법에서도 방문상담, 청소년단체 상담의외보다는 주로 범죄소년을 대상으로 비행문제를 중점적으로 직접상담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행소년 보호자에 대한 상담내용은 비행문제보다는 가정문제가 주로 행하여지고 있다.

3) 가두보도활동은 수시로 행하는 일상가두 보도활동을 통하여 불량행위소년을 조기에 발견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유해업소의 단속내용은 미성년자 주류제공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미성년에 대한 주류판매는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해업소의 업주에 대하여도 불구속조치로서 처벌하고 있어서 단속자체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5) 비행위험성 판정자료는 예측자료가 현실에 맞지 않아서 소년 비행의 예측 및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6) 촉법소년의 가정법원 송치시 동행영장 발부의 필요성은 동행 등으로 인한

업무과중과 소년경찰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라. 비행예방 및 선도 프로그램

1) 청소년지도위원은 상담능력 등 자격상의 문제와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인사들로 위촉되고 있어 청소년선도에 다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고 청소년지도위원 연령층은 30대, 직업은 지역사회유지를 중심으로 위촉되고 있다. 또한 이들의 활동은 장학금 지급과 불우아동자매결연 등을 주고 받고 있어 상담보호활동이나 가누보호활동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청소년범죄예방 교실의 비행예방효과는 담당교관의 교육기법의 미숙과 학교의 비협조 때문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랑의 교실은 비행소년동행 등으로 인한 업무과중과 법적 근거가 없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비행소년의 선도에 다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비행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단체에 위탁해서 실시해야 한다는 견해가 압도적인 견해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의 불필요성을 인정한 이유는 관리상의 어려움과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고 소년의 인권을 침해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제시되고 있다.

4) 청소년 통행금지제도의 효용성은 82.1%가 소년비행 예방에 매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5) 비행소년 보호자에 대한 교육방식의 개선 필요성은 86.8%가 인정하고 있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6) 중퇴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69.5%라는 과반수 이상이 이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7) 조직범죄집단 가입방지를 위한 관리정도는 59.4%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을 하고 있어 비행소년의 조직범죄 집단 가입방지를 위한 대책이 요망된다.

8) 보호자에 대한 처벌은 긍정도 아닌 부정도 아닌 모호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고 보호자에 대한 처벌을 한다면 교육프로그램 수강조치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는 기관은 비공식 통제기관 중 청소년단체, 학교(교육청 등), 지역사회(시군구), 청소년 직장, 가정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V. 청소년비행 통제를 위한 소년경찰 대책

1. 경찰조직외부의 기반조성

가. 관련법규의 완화

형사사법기관 중 최일선에서 소년비행의 예방과 비행소년 처리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소년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소년경찰은 비행소년을 소년사법절차에 개입시킬 것인가 또는 불개입시킬 것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년법 제4조 2항에서 축범소년, 우범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을 규정하고 있어 전건송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비행소년을 처벌해야 한다는 사상이 근저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보호라는 소년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비행소년의 낙인화를 조장함은 물론 현실적으로 소년부에 송치되는 소년은 축범소년만 송치되고 우범소년은 송치되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처벌위주로 소년경찰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강제성을 띠고 있어 소년경찰의 비행소년 선도업무에 장애를 초래하는 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경미한 비행소년에 대하여 소년사법절차에 개입시켜 공식적인 주의나 훈방으로서 공식적 통제망의 확대(Widening the Net of the Official Control)를 통한 낙인화·누범화를 방지하고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비공식적인 상담 등으로 비행소년을 소년사법절차에 불개입시키는 전환제도(Diversion)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청소년의 재범율을 기준으로 비행청소년 통제제도의 효과성을 측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78년 OJJDP(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는 전국

단위의 전환제도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미전역에 걸쳐 미조리주 캔사스시, 테네시주 멤피스시, 플로리다주 오렌지 카운티, 뉴욕시 등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통제집단은 비공식적인 상담에 참여한 비행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실험집단은 소년법원에 송치된 비행소년을 대상으로 효과성을 측정하여 이들 양 집단을 비교하였으나 이들 집단간의 재범율은 아무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1970년에 조사된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Sacramento)시의 전환프로그램은 가출소년과 부모의 감독을 벗어난 소년 등을 대상으로 경찰, 학교, 보호자 등이 소년지원반에 회부하여 몇시간 동안 보호자와 소년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진다. 이 상담이 끝나면 가족과 함께 가정으로 돌아온다. 가정이 없는 소년은 양육가정(Foster Home)에 보내어지고 여기서 4차에 걸친 강도높은 상담이 이루어지진다.

1972년 이 프로그램은 경미한 비행자에게 확대시행되었고 그 결과는 재범률의 감소현상을 나타냈다. 1년동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재범율은 54.2%인 데 비하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재범율은 46.3%을 나타냈다.⁹⁾ 이와 같이 새크라멘토시의 전환프로그램은 보호자와 소년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철야구금을 회피하고 소년법원의 송치를 회피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여기서 OJJDP의 전환프로그램과 새크라멘토시의 전환프로그램은 현저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OJJDP의 전환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 소년사법절차에 개입된 소년을 대상으로 한데 반하여 새크라멘토시의 전환프로그램은 비공식적으로 소년사법절차에 개입시키지 않은 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¹⁰⁾

이와 같이 경찰단계에서 비행소년을 공식적인 소년사법절차에 개입시키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비행소년의 낙인화를 방지함은 물론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9) Robert C. Trojanowicz · Merry Morash, *Juvenile Delinquency: Concept and Control* (Englewoodcliffs, N.J. : Prentice Hall, Inc., 1987), p. 228.

10) Richard L. Lundman, *Prevention and Control of Juvenile Delinquency*(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pp. 97-98.

따라서 미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소년법 제4조 2항을 임의조항으로 개정하여 소년경찰의 정신에 맞게 경찰단계에서 비행소년을 소년사법절차에 개입시키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2) 청소년선도의 법적 근거 명확화

경찰법 제3조는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는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 경비, 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3)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로 경찰관의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경찰직무규칙에 의하면 소년경찰의 활동은 ① 범죄소년의 수사 ② 청소년비행예방 ③ 우범소년 및 불량행위소년 등 청소년 선도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경험적으로 청소년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선도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소년 선도는 청소년의 재범을 방지함으로서 사회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책집행 수단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죄소년의 수사와 청소년비행예방에 관한 규정은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경찰관련법상 청소년선도에 관한 규정은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법 제3조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를 개정하여 청소년선도 조항을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의 강화

1) 가정의 협조

가정이 청소년비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연구 등을 통하여 입증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가정이 소년경찰과 협조체제가 가장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정과 소년경찰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행소년의 보호자에 대한 소년경찰의 상담 및 교육이 긴밀히 이루어져야 한다. 보호자와의 상담은 가정내의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어 보호자의 협조를 얻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호자는 자녀가 처벌을 받게 되면 미래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로 인해 부모는 자존심을 상하게 되고 자녀는 수치심과 충격으로 주변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비행청소년의 장래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부모 등 보호자의 협조와 이해가 필요하다.

보호자에 대한 교육내용은 강연회나 토론회 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개인면담이나 집단면담을 통하여 할 수도 있으며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비행소년부모회를 조직하여 자녀의 교육 및 훈육방식의 개선에 대하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월례모임을 가지는 것도 비행소년의 선도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학교의 협조

① 비행소년의 퇴학 재고

비행소년, 특히 범죄소년의 경우 사법절차 도중에 구속적부심, 보석, 위탁변경 결정 등의 조치가 없다면 경찰, 검찰, 소년부 등을 거치면 적어도 2개월 이상 학교에 출석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칙을 들어 자퇴를 하게 하거나 제적처리함으로써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아도 학교에 복귀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됨으로써 재비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학교에서는 학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다른 학생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조치를 하지만 비행소년을 신도하여야 하는 교육적 입장에서 이런 조치는 재고되어야 한다.

② 현실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

법에 대한 엄격성과 범죄행위에 따르는 사회적 처벌과 불이익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명사초빙, 시청각 교재활용 등의 행사성교육보다는 청소년단체 관계자, 변호사 등 현장에 있는 사람을 초빙하여 이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은 효과적인 것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범죄나 비행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일깨워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과의 체육대회, 노래시합, 학교축제 등을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생과 경찰이 신뢰감을 형성하여 현장감있는 교육을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㉓ 교사의 지도 강화

교사는 청소년의 생활을 파악하여 비행이 발생하는 장소, 시간대 등에 관한 정보를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알고 있다. 교사의 지도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교외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수당을 지불하고 뿐만 아니라 충분한 지도사유와 내용이 첨부된 보고서는 청소년단체와 소년경찰이 이를 인정해주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대기발령상태인 예비교사를 비행소년선도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발령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사회의 협조

㉑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보호에 관한 조례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종의 청소년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가칭 「청소년 육성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판매규제, 자동판매기의 규제, 출입제한 등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규제와 음행규제, 문신규제, 심야외출 규제 등 청소년자신에 대한 유해행위의 규제로 나누어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㉒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및 예산지원

청소년보호에 관한 책임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책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보호업무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의 경우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년보호센터를 설치하여 가무보호, 환경정화활동, 소년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소년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업무를 경찰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대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㉓ 건전한 놀이공간과 수련시설 확보

지역사회는 유해업소 등에 대한 자율정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건전한 놀이공간과 수련시설을 확보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비행에 물들지 않고 지역사회의 소속감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건전한 놀이를 할 기회가 증가할수록 청소년의 비행기회가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청소년 보호와 육성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2. 소년비행통제를 위한 소년경찰 대책

가. 소년경찰 조직의 적정화

현재의 소년경찰의 조직규모는 적정하지 않아 이를 계단위와 과단위로 확대개편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동경경시청은 소년제1과 소년제2과 2개과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도 시카고시 등 대도시에는 소년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보다 소년경찰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서의 경우는 각 급지 및 소년비행의 심각성에 따라 소년경찰 조직의 규모기준을 정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소년계라는 명칭도 일본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권위주의적, 전근대적인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소년계란 명칭이 좀 더 부드러운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소년보호계, 소년선도계 등으로 개칭해야 할 것이다.

나. 소년경찰의 인사행정의 내실화

1) 소년경찰 인력의 증원

소년경찰의 업무실적을 보면 1994년의 경우 비행소년 중 소년경찰이 처리한 비행소년은 108,721명 중 37.4%¹¹⁾인 40,661명, 불량행위소년은 226,531명을 나타

11) 1996년의 경우 전체소년범 중 37.4%를 소년경찰이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찰청자료 96년 1-9월 수사전담반 처리실적 참조.

지역사회는 유해업소 등에 대한 자율정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건전한 놀이공간과 수련시설을 확보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비행에 물들지 않고 지역사회의 소속감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건전한 놀이를 할 기회가 증가할수록 청소년의 비행기회가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청소년 보호와 육성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2. 소년비행통제를 위한 소년경찰 대책

가. 소년경찰 조직의 적정화

현재의 소년경찰의 조직규모는 적정하지 않아 이를 계단위와 과단위로 확대개편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동경경시청은 소년제1과 소년제2과 2개과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도 시카고시 등 대도시에는 소년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보다 소년경찰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서의 경우는 각 급지 및 소년비행의 심각성에 따라 소년경찰 조직의 규모기준을 정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소년계라는 명칭도 일본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권위주의적, 전근대적인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소년계란 명칭이 좀 더 부드러운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소년보호계, 소년선도계 등으로 개칭해야 할 것이다.

나. 소년경찰의 인사행정의 내실화

1) 소년경찰 인력의 증원

소년경찰의 업무실적을 보면 1994년의 경우 비행소년 중 소년경찰이 처리한 비행소년은 108,721명 중 37.4%¹¹⁾인 40,661명, 불량행위소년은 226,531명을 나타

11) 1996년의 경우 전체소년범 중 37.4%를 소년경찰이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찰청자료 96년 1-9월 수사전담반 처리실적 참조.

내고 있어 전체 비행소년 267,192명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년경찰은 720명이므로 소년경찰 1인당 비행소년 371명을 처리 및 선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소년경찰 1인당 적정처리인원은 64.9명¹²⁾이므로, 행정업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소년경찰 인력이 비행소년 사법처리에 매달렸으며, 청소년 선도를 위한 인력은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비행청소년 선도에 대한 업무비중을 높이고 이에 대한 전종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2) 지도반 인력의 보강

소년경찰의 인력은 비행소년을 발견·조사하는 수사반과 비행소년을 상담·보호하는 지도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이러한 인력배분이 수사반 3 : 지도반 1의 비율에서 지도반의 인력을 보강하여 수사반 1 : 지도반 1의 비율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처벌위주로 소년사건을 처리하기 보다는 소년보호 및 선도라는 소년경찰의 목적에도 부합하게 될 것이다.

3) 소년경찰 전문화과정 신설

소년경찰은 업무의 특성상 비행소년을 선도하고 조사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비행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분야보다도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년경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년경찰 전문화과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소년경찰 전문화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6〉 소년경찰 전문화과정 교육체계(안)

교육방법	교육기간	교육내용
청소년단체의 청소년지도자 과정 교육위탁	3-4주	소년비행론, 교육학, 심리학 사회병리학 등

12) 하태권 외 2명, "경찰행정업부의 계량적 지표체계개발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 제12호, 치안연구소, 1996, p. 66 (표 4-13) 지방청별 비행청소년 선도 참조.

교육방법은 경찰교육기관보다는 청소년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자과정에 위탁하여 교육하여야 하고 교육기간은 3-4주로 하며 교육내용은 소년비행론, 교육학, 심리학, 사회병리학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4) 청소년지도자 자격증취득자에 대한 승진심사시 가산점 부여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벗어나 사회와 자연속에서 심신을 단련하고 개인의 자질이나 취미를 계발하며 사회봉사활동 등의 체험을 쌓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과 동시에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수련거리와 수련시설을 마련해주고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지도자를 말한다. 소년경찰의 경우 이러한 청소년지도자자격증이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되지만 승진심사시에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현행 자격증의 가산점 운영실태를 보면 법무사, 행정사 및 각종 기술자격증 기사1급은 0.3점의 평정점수를 부여하고 있고 공인중개사 및 각종 기술자격증 기사2급은 0.2점의 평정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경찰의 승진심사시에 청소년지도자 1급자격증 취득자는 0.3점의 평정점수를 부여하고 청소년지도자 2급자격증 취득자는 0.2점의 평정점수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 소년경찰 운영의 합리화

1) 소년경찰직무규칙의 개정

소년경찰직무규칙은 청소년을 과학적으로 보도하고 유해환경을 정화하며 비행을 방지하고 비행소년을 합리적으로 처우함으로써 청소년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1991년 7월 31일 경찰청 예규로서 제정되고 1993년 6월 22일 경찰청예규 101호로 1차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1장 총칙(통칙, 기본원칙, 간부의 직무), 제2장 비행방지지구계획, 제3장 유해환경의 정화, 제4장 소년의 보도(통칙, 비행소년의 보도, 보도후의 조치), 제5장 비행소년의 처우(통칙,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제6장

기록, 제7장 경찰청이 행하는 소년경찰활동, 부칙 등 7장 52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규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행소년의 발견, 조사, 선도 및 처리절차를 주로 규정하고 있으나 비행소년 선도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찰관 직무직행법과 소년경찰 직무규칙의 개정 등을 통해 현재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사랑의 교실 등의 프로그램에 관한 근거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 비행성 예측자료표의 개선

비행성 예측자료표는 불량행위소년을 대상으로 1) 선별이 곤란한 경우 2) 선도함에 있어서 곤란한 경우 3) 관계기관에 통보 또는 송치함에 있어서 특히 주의할 요하는 경우 4) 과거의 비행경력이 있는 경우 5) 보호자가 판정을 의뢰한 경우 등에 실시한다. 비행성예측법은 사회항목법과 심리검사법으로 구성되는데 사회항목법을 보면 1) 생계담당자 2) 결혼가정 3) 의무교육 4) 장기결석 5) 교우관계 6) 가출경험 7) 조발비행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심리검사법은 비행소년이 가지고 있는 반사회적 이상성격의 특징을 통계적으로 선정한 7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같이 비행성 예측자료표는 형식적, 비과학적,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작성되고 있어 청소년선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비행성예측자료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첫째, 청소년 범죄성향의 성격형성에 관련된 주관적 사회항목은 가정과 관련된 아버지에 의한 소년의 훈육방식, 가정의 도덕적 행동기준, 가정의 결함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교우관계 등 청소년을 둘러싼 요인들을 중심으로 객관적 사회항목은 부모의 생존여부, 가정의 총수입액, 동거가족수, 주거지 환경, 주택상황, 가출경험유무, 학업성적, 친구들과 노는 장소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MMPI 566문항 중에서 비행성척도, 충동성척도, 자기억세척 척도, 허구성척도 등을 조합하여 성격검사항목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관적 사회항목, 객관적 사회항목, 성격검사항목을 각요인별로 실질을 부여하고 최종판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비행성예측자료표는 범죄학자, 심리학자 등이 공동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비행성예측자료표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라. 보호·선도프로그램의 강화

1) 선도프로그램 운영의 이원화

일반적으로 비행소년 선도프로그램은 교육프로그램과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진다. 현재 비행소년 교육프로그램인 사랑의 교실은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서울), BBS지방연맹(기타지역)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의 운영실태를 보면 중등반과 고등반으로 나누고 신분별로 중학생, 고등학생, 근로청소년, 재수생, 무직 기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상자들의 비행내용을 보면 절도, 폭력, 유해업소 출입 등으로 법원송치대상자를 제외한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등 비행소년과 불량행위소년 중 즉심대상자, 훈방대상자 및 보호자의 의뢰가 있는 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랑의 교실은 범죄유형별로 구분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이원화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원화체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범죄유형별로 구분하여 절도, 강도 등의 소년범들은 노동을 싫어하고 쉽게 금전을 획득하려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소년범에 대하여는 무보수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해야 할 것이므로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적합할 것이다.

또한 약물남용소년, 성폭력소년, 폭력소년 등에 대하여는 성격 등 정신심리상태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교육이 필요하므로 이런 소년에 대하여는 약물의 해독성이나 성교육 등을 수강케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효과적으로 비행소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년비행의 원인을 제공한 성인복지법은 청소년단체 등에 가서 사회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¹³⁾

이와 같은 선도프로그램은 경찰이 주체가 되어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간은 비행자의 연령, 비행의 경중 등을 감안하여 신축성있게 결정하여야 하지만 20시간 이내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또한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봉사내용도 파출소직원과 동행순찰과 교통정리 등 경찰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표 67〉 비행소년선도 보호프로그램의 운영의 이원화 체계(안)

구 분	교육프로그램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사랑의 교실	땀의 교실
담당기관	청소년 단체	청소년 단체포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물남용소년 - 성폭력 소년 - 폭력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도, 강도 등의 소년
시 간	20 시간	20 시간
요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물의 해독성 - 성교육 - 심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의 순찰 보조 - 교통정리 보조

2) 경미한 소년비행자에 대한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도입

현행 소년법 규정에 의하면 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에 대하여 보호관찰관의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16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¹⁴⁾, 사회봉사 또는 수강

13)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에서도 성폭력범을 여성단체에 보내어 사회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방향이 굳어지고 있다.

14) 소년법 제32조 제1항 및 제3항

시간은 단기보호관찰에 병과되는 경우는 50시간을, 보호관찰에 병과되는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¹⁵⁾

또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제도는 범죄인의 사회에 대한 보상, 속죄 등 지니고 있는 여러가지 기대효과로 인해 1997년부터는 형법의 개정에 의해 성인에게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경미한 비행소년에 대한 처리면에서 고려해야만 할 사항이 있는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 경미한 소년비행자에 대하여도 소년부에 송치하여 단기보호관찰처분과 병과하여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것은 비행소년의 반사회성 또는 위반행위의 비난가능성보다 더욱 큰 심리적, 실질적 부담을 소년에 안겨 주고, 위반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비행과 그에 대한 처벌이 시간적으로 유리되어 처벌의 심리적 수인정도가 낮아짐에 따라 소년의 선도와 반성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지 못할 우려가 있게 된다.

따라서 경미한 범죄를 범한 소년범죄자에 대하여 소년 스스로 장기간 범죄자의 신분이라는 억눌린 심리상태를 계속하고, 사회적으로도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기보다는 선도보호차원에서 즉결심판과 같은 간이절차를 통해 비행소년에 대하여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함으로써 비행에 대한 신속한 가치판단과 반성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는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판사에게 청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경미한 소년비행자에 대한 기존 형벌의 효과를 살펴보면,

먼저 재산형의 경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소년에 대하여 벌금 또는 과료등 재산형을 부과하는 것은 형벌이 처벌당사자인 청소년 개인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등 보호자에게 귀착하게 되므로 처벌의 실효성이 미미하고 청소년 비행에 대한 억제효과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유형인 구류형의 경우 처벌을 위해 청소년을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하

15) 동법 제33조 제4항

는 경우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에게 반성과 개선의 기회를 주기보다는 학업의 중단과 범죄의 학습으로 인해 오히려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즉결심판의 대상을 정하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를 일부 개정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된 부분을 제1안 ;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거나, 수감 또는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로 규정하는 방안과, 제2안 ; 제2조에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단, 20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수감 또는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방안이 있는 바, 생각컨대 1997년의 개정형법 시행과 함께 성인범에게도 사회봉사 명령과 수감명령이 적용될 것이므로, 경미한 범죄행위자로 2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도 사회봉사명령과 수감명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1안과 같이 개정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3) 청소년통행금지제도의 도입

야간 청소년통행금지제도는 청소년비행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현재 미국의 경우 200여개의 도시 중 146개의 도시, 일본의 경우도 46개의 도도부현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도입의 찬반논의가 진행중에 있으나¹⁶⁾ 청소년통행금지제도가 청소년비행 예방에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어 외국의 사례와 같이 이를 적극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도입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입법형식과 시행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① 입법형식

㉑ 미성년자 보호법상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 조항을 보완하여 운영하는 방안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 1항 5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일 20:00—익일 05:00까지 전국의 68개지역(윤락가 45개지역, 유흥가 20개 지역, 기타 3개지역)을 경찰서장이 지역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16) 청소년통행금지를 반대하는 입장은 청소년의 권리와 부모의 자녀양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찬성하는 입장은 청소년비행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통행금지제도를 미성년자보호법에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반대논거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성년자보호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흥업소 출입을 허용한 영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반미성년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동 법률은 입법취지, 처벌대상이 청소년통행금지제도와 상반되므로 청소년통행금지제도를 미성년자보호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리상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지역과 관련하여 일정한 유해 유흥업소 등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성년자 보호법상 출입금지 지역과 전반적인 통행제한을 의미하는 청소년 통행금지 제도는 대상지역이 다르며,

셋째, 시간대와 관련하여 미성년자 출입제한 구역은 출입제한 시간대를 20:00-05:00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대로 거론되는 23:00-05:00의 시간대와는 일치하지 않아 청소년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청소년 통행금지 제도를 미성년자보호법에 함께 규정하는 심리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 미성년자 보호법을 전면개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표 68〉 유해환경정화를 위한 규제

규제형태	세 부 내 용
판매규제	① 유해도서류의 판매금지 ② 칼 등 위험물의 판매금지 ③ 신나,톨루엔 등 유해약품판매금지 ④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판매금지
자동판매기의 규제	① 포르노잡지 유해잡지 판매금지 ② 위생용품 및 피임기구의 판매금지
출입제한	① 성인영화상영관의 입장금지 ② 폭력성, 잔인성을 조장하는 연극, 전시물 등의 관람 금지
기타 유해환경의 정화	유해광고물게시 금지

미성년자보호법에 청소년통행금지제도를 규정할 경우에는 입법취지 및 처벌대상 등이 상반되므로 동법을 전면개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전면개정의 경우에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시행하는 청소년보호육성조례와 같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ⅰ) 영업자를 처벌을 위한 유해환경정화를 위한 규제와 ⅱ) 청소년자신에 대한 처벌을 위한 유해행위의 규제로 구분하여 규정해야 하고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69〉 청소년 자신에 대한 유해행위의 규제

규 제 형 태	세 부 내 용
음행규제	나이 어린 여성과 성인과의 불순한 성관계 금지
문신규제	청소년에게 문신을 새기거나 권유 또는 주선 금지
심야통행규제	심야에 정당한 이유없는 청소년의 외출금지
기 타	① 비행집단의 결성 금지 ② 음주·흡연의 권유 금지 ③ 심야 흥행장 출입금지 ④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물매수, 전당행위, 금전내부 등

④ 새로운 단일특별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청소년통행금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새로운 단일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시적, 행정편의주의적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통행금지제도는 실시지역, 통금대상 및 제외대상, 통금시간, 단속기관, 통금위반시 처벌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법률내용이 간단하여 법체계 구성이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단일특별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⑤ 시군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일본과 미국은 전국적·통일적인 중앙입법은 없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청소년통행금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제의 구성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조례내용에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서 불공정한 운용과 과도한 규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

기 때문에 중앙입법화하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경우 중앙입법화보다는 청소년과 직접 접촉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흥업소심야영업 규제조치와 같이 시군의 조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최근의 추세는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중앙입법화는 이러한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통행금지제도의 입법형식은 미성년자보호법을 전면개정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② 시행방안

㉠ 실시주체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의적으로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실시지역

도입초기에는 각 시·도지사가 1개구·시를 지정하여 1년동안 시범적인 운영을 거쳐 효과성을 측정후 신축성있게 대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통금대상 및 제외 대상

통금대상은 현행 미성년자보호법상 규제연령인 18세미만의 청소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참고로 일본은 18세미만인 청소년, 미국은 18세 내지 17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i) 부모 또는 보호자와 동행하는 청소년 ii) 합법적 직업활동, 학교활동, 종교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 iii) 위급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은 통금대상에서 제외한다.

㉣ 통금시간

통금시간은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신축성있게 조정하되 시작시간은 청소년의 과외활동과 학교에서의 보충수업 등을 감안한다면 12:00가 적절할 것이다. 종료시간은 신문배달소년 등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04:00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일본은 23:00-익일 04:00를 통금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미국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23:00—익일 06:00까지이고, 금,토요일의 경우는 토요일이 휴업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야간과 토요일 야간은 통금시간을 연장하여 24:00—익일 06:00까지로 하고 있다.

㉞ 위반자처벌

위반청소년에 대한 처벌은 사회봉사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보호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특별교육 수강조치가 적당할 것이다.

일본은 위반청소년과 보호자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 미국은 위반청소년에 대하여는 최고 25시간 사회봉사활동을 부과하고 있으며 동시에 부모 또는 청소년직장 책임자에게 500달러의 벌금이나 특별교육을 수강토록 하고 있다.

4) 학교 중퇴자 관리의 강화 - 교육과 직업보도

대부분의 중퇴자들은 학교에서 성적불량, 무단결석 등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부모가 관심을 크게 두지 않는 학생들이다. 이런 학생들은 가출을 하거나 학교주변 등을 배회하면서 폭력을 일삼고 있으며, 유흥업소 등 유흥서비스 업종에 취업하여 불량소년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중고등학교 중퇴자는 1980년대 이래 매년 6~7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재학생수에 대한 중퇴자의 비율은 거의 일정하게 1.5%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중퇴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가 전체 청소년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도 기준 19.5%에 이르고 있어 전체 중고생 연령층에서 중퇴자가 차지하는 인원비율에 의하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¹⁷⁾

중퇴자의 높은 범죄성향으로 볼 때, 중퇴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공식, 비공식적인 관리의 강화는 청소년 비행 특히 범죄를 통제하는데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퇴자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이들 중퇴자의 비행성향, 가출여부 등 개인의 범죄성향을 조사함과 동시에 복지적 차원에서 취업여부, 가정환경, 주거실태,

17) 손승영, 학업중퇴자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여의도정책논단, 1996 겨울호

보호자 직업 등을 조사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조사가 끝나면 보호자와 중퇴자의 특별교육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보호자가 참석할 경우에는 교육의 효과를 고려하여 교육내용에 따라 중퇴생과 동시 또는 분리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경찰,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관련된 특별강연이나 심성개발프로그램을 실시하되 심성개발프로그램은 ① 친밀감,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이름 및 별칭외우기 게임 ② 자신의 생활모습을 발견토록 하기 위한 자신드러내기 ③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물에 대한 긍정점 발견하기 ④ 자신감 및 가능성을 발견하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중퇴자에 대한 이와 같은 교육은 이들에 대한 직업보도와 관련지어져야 보다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바, 경찰은 관련기관단체와 협력하여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직업상의 능력과 적성에 부합하는 직장을 알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청소년 비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퇴자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비행소년의 조직범죄집단 가입방지를 위한 특별관리

비행소년이 학교재학시에 불량씨클에 가입하여 초범, 2범 등으로 발견하고 졸업후에는 조직범죄집단에 가입하는 경로는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비행소년이 조직범죄집단에 가입하여 범행을 일삼아 성인범죄자로 전이하는 비율을 보면 소년기에 1-2회 소년비행자는 성인범죄율이 52%, 3-4회 소년비행자는 70%, 5회이상의 소년비행자는 80%정도가 성인범죄자로 발전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¹⁸⁾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년경찰은 비행소년이 조직범죄집단으로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과 일본과 같이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소년누행자들을 특별관리하는

18) 김준호·이순래, "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995.

전산프로그램과 누범과 카드를 개발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소년사법절차에 있어서 소년누행자 관리실태를 보면 소년부가 보호처분결정을 한 경우 그 결과를 경찰이나 검찰에 통보하지 않고 있어서 그 소년이 다시 누행을 하였을 경우에도 경찰은 종전의 소년부의 보호처분의 결과를 확실히 알지 못한 채 조사를 하게 된다.

그러나 경찰은 대상사건에 대하여 적절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그 소년이 종전에 받은 보호처분결과를 참작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전의 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년부에서 소년경찰, 검찰, 소년부 등 소년사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 자체적으로 조사한 소년누행자를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소년법 제35조 5호에 규정하고 있는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하기 위하여 접근이 가능한 자는 경찰청 소년계 직원으로 하고 용도는 조사참고용으로 제한하며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누범에 대한 정기적인 관찰과 관심 표현은 잠재적 청소년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안전반으로 청소년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안전 확보에 유용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6) 비행소년의 보호자에 대한 처벌

청소년기본법 제6조는 가정은 청소년의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구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후속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호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자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혼 및 맞벌이로 인한 무관심, 응석받이 교육, 체벌이나 학대 등으로 보호자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보호의무를 게을리하여 청소년비행이 발생하였을 때 보호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이다.¹⁹⁾ 이러한 처벌에는 일정기간동

19)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건복지부는 부모의 양로원 등에 부양을 의뢰한 자녀에 대하여 양로원측에서 자녀에게 부양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안 청소년단체에 보내져 부모가 지켜야 할 일, 자녀와의 대화법 등 보호자의 청소년 훈육방식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교육 수강조치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대법원은 1997년 하반기부터 보호자의 가정교육 잘못 등 비행원인의 상당한 책임있는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제도를 도입키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 할 수 있다.²⁰⁾

7) 소년경찰대의 창설

경찰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하고 스스로 비행을 자제토록 함과 동시에 장차 경찰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년경찰대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

소년경찰대를 창설할 경우 관리주체는 각 경찰서 소년계(소년반)가 되고 구성은 관할구역내의 중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각 반에 성적이 우수하고 사회봉사활동 성적이 우수한 학생 1명씩을 선발하여 조직토록 한다.

소년경찰대가 사회봉사활동을 할 경우에 교통정리, 동행 순찰 등 경찰과 관련된 활동을 사회봉사활동으로 할 수 있게 하고 방학 중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각 경찰서에서 약물의 해독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경찰의 활동전반에 관한 교육을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외부의 문구제작업체의 협력을 얻어 경찰을 상징하는 각종 문구를 제공받아 경찰서 교육시에 이들에게 배부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8) 청소년지도위원 위촉방식의 개선

현재의 각 경찰서가 위촉한 청소년지도위원은 경제적 지원능력이 있는 지역의 유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인사들은 시간적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담능력 등 자격상의 문제가 있어 청소년 선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선도는 경제적 지원능력도 중요하지만 직접 비행소년과 접촉을

20) 조선일보, 1996. 11. 26.

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상담하고 지도·조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사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적합한 인사는 학교주변의 문구점업자, 분식점업자, 서점업자, 독서실업자, 학원원장, 시립도서관장 등을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위촉하면 우선 청소년과 자주 접촉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상담 등을 할 수 있어 청소년선도에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청소년 약물남용과 관련하여 약사나 의사 등도 약물남용에 대한 유해성 등을 상담할 수 있어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하는데 적합한 인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위원은 지역유지, 중소기업대표 등 경제적 지원능력이 있는 인사와 청소년과 직접 접촉하고 상담할 능력이 있는 인사를 동일한 비율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VI. 제언 및 결론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소년경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조직외부에서 소년경찰활동의 효율화를 위해서 환경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소년법 제4조 2항을 강제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개정해야 하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의 비공식적 통제기관과 소년경찰과의 협력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소년비행 통제를 위해서 소년경찰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적정화

현재의 조직규모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방경찰청의 경우는 과단위로, 경찰서는 급지 및 소년비행의 심각성에 따라 신속성있게 확대개편해야 한다. 그리고 소년계의 명칭도 좀더 부드러운 소보호계, 소년선도계 등으로 개칭해야 한다.

2) 인사행정의 내실화

소년사건 처리실적을 보면 현재의 720명인 소년경찰을 5.7배로 증원해야 하고 지도반의 인력을 현재보다 2배정도 증원해야 한다.

소년경찰전문화과정을 신설하기 위한 교육체계는 청소년단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자 과정에 교육을 위탁하고 교육기간은 3-4주가 적정하며 교육내용은 소년비행론, 교육학, 심리학 사회병리학 등의 과목을 포함시켜 운영해야 한다. 이와 같이 청소년지도자과정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승진심사시에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

3) 운용의 합리화

소년경찰직무규칙을 개정하여 현재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사랑의 교실등 선도프로그램을 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 실효성이 없이 작성되고 있는 비행성예측자료표는 주관적 사회항목, 객관적 사회항목, 성격검사항목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범죄학자와 심리학자가 공동으로 연구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4) 보호·선도프로그램의 강화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방식을 개선하여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인사와 상담능력이 있는 인사를 동일한 비율로 우측해야 한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인 사랑의 교실을 개선하여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는 이원화체제로 개편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입법방식은 경미한 즉결심판대상자에게 즉결심판절차법을 개정하여 규정하는 방안과 훈방대상소년과 보호자의 의뢰가 있는 소년에 대하여 소년경찰직무규칙을 개정하여 규정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청소년 통행금지제도는 현재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으나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청소년비행에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어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입법형식은 미성년자보호법을 전면개정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에 위임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본다. 청소년통행금지제도를 규정할 경우 실시주체, 실시지역, 통행대상 및 제외 대상, 통행시간, 위반처벌 등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해야 한다.

중퇴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보호자와 동행하여 교육을 이수토록 해야 하고 교육후에 복학, 취업, 휴식 등을 결정하는 평가작업이 있어야 한다.

비행소년 조직범죄집단 가입방지를 위해서 소년경찰 자체적으로 조사한 소년누행자를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나누어 전산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또한 소년비행의 가정교육의 잘못 등 그 책임이 보호자에게 있을 경우에는 보호자에 대한 훈육방식의 개선을 교육내용으로 하는 특별교육을 수강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하기 위하여 소년경찰대를 창설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방향으로 소년경찰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때 소년사법절차에서 소년경찰의 역할을 확고하게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소년경찰은 비행소년을 조사, 처리하여 낙인화·누범화할 것인가 또는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하여 선도·보호하여 가정으로 돌려보낼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년사법에 있어서 첨병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만큼 소년사법절차에 있어서 소년경찰은 청소년선도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소년경찰에 대하여 경찰관리자는 관심영역밖의 일로 생각하여 왔고 소년경찰에 대한 연구도 부진한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학교주변폭력과 관련하여 소년경찰이 주체가 되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소년경찰활동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자 한다.

앞에서 제안한 청소년 비행통제를 위한 소년경찰대책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때 소년사법절차에서 소년경찰의 역할을 확고하게 정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년경찰의 활동을 효율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이념을 구현하는 첩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년경찰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고 협력주의의 바탕위에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협력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경찰대학, 경찰방법론, 1995.
- 경찰종합학교, 방법경찰(간부후보생), 1996.
- 김승구, 외국의 소년범죄처리제도와 실태, 연구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 김준호·이순래, “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 연구 원연구보고서, 1995.
- 김형청,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청소년비행예방:경찰활동을 중심으로,” 치안정책 연구, 제4호, 1996.5, 치안연구소,
- 이기현 외, 미국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 이상현, 범죄심리학, 서울 : 박영사, 1995.
- 이완구, “한국경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6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992.
- 장석현,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활성화 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6호, 한국공안행 정학회, 1996.
- 전대양, “한국 학교주변폭력배의 실태와 그 대응방안,” 세미나 자료집, 1996. 6. 한국 공안행정학회, 1996.6.
- _____, “음란·폭력물의 시청과 범죄성과의 관계”,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호, 한국공안행정학회, 1994.
- 성영석·신양균, 형사정책, 서울 : 법문사. 1995.
- 하태권외 2인, “경찰행정업무의 계량적 지표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치안연구소, 치 안논총, 제12호, 1996.
-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1995.
- 경찰청, 경찰백서, 1995.

문화체육부, 청소년백서, 1995.

조선일보, 1996.11.26일자.

Leonard, V.A. et al., Police Organization and Management, Mineola, New York: The Foundation Press, Inc., 1978.

Kratcoski, Peter C. · Lucille Dunn Kratcoski, Juvenile Delinquency, N.J.: Prentice Hall, Inc., 1979.

Siegel, Larry J. · Joseph J. Senna, Juvenile Delinquency, St. Paul: West Publishing Co., 1994.

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Criminal Justice Standard and Goals, Task Force Report on Juvenile Justice and Juvenile Delinquency, Washington, D.C.: Law Enforcement Assistance Administration, 1976.

National Crime Prevention Council, Partnerships to Prevent Youth Violence, BJACommunity Partnerships Bulletin, August, 1994.

Trojanowicz, Robert C., · Merry Morash, Juvenile Delinquency: Concepts and Control, N.J.: Prentice Hall, 1987.

警察廳, 警察白書, 平成 7年.

警察制度研究會 編著, 警察23, 昭和60年.

上野治男, 米國の警察, 東京: 良書普及會, 昭和56年(1981년)

總務廳青少年對策委員會, 青少年白書, 平成 7年

平野龍一, 講座 少年保護: 處遇와 豫防, 東京: 大成出版社, 1983.

澤登俊雄, 少年法入門, 東京: 有斐閣, 1995.

〈설문지〉

청소년비행 통제를 위한 소년경찰 대책

안녕하십니까?

저희 경찰청 치안연구소에서는 『소년비행과 소년경찰 대책』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우리나라 소년경찰의 현실태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이 설문지의 내용은 소년경찰의 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무기명으로 작성되므로 귀하의 신상에 대한 비밀은 절대로 보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다음의 질문들은 소년경찰 실무자로서 체험한 내용이나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의견을 알아보는 것이오니 잘 읽어보시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실하고 진실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 9.

경찰청 치안연구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군동 209 경찰청 205호실

Tel: 365-2240

※ 다음 질문들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항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I. 다음은 소년경찰의 조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현재의 소년경찰 조직규모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하다. 2번으로 가십시오
 ② 적절한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⑤ 매우 적절하지 않다.

1-1. 적절하지 않다면 귀하는 현재의 소년경찰의 조직규모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계단위에서 과단위로 확대개편해야 한다.
 ② 계단위와 과단위의 중간단위로 확대개편해야 한다.
 ③ 현행규모가 적정하다.
 ④ 계단위보다 축소해야 한다.
 ⑤ 경찰관 1인을 지정하여 소년업무를 담당하도록 축소해야 한다.

2. 현재의 「소년계」라는 명칭을 변경하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동의한다.
 ② 동의하는 편이다.
 ③ 모르겠다.
 ④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1. 소년계의 명칭을 변경하는데 동의한다면 어떤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소년보호계 ② 소년상담계

- ③ 소년보도계 ④ 소년선도계
- ⑤ 소년조사계 ⑥ 기타()

3. 소년계(소년반)가 수사반과 지도반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구분하는 것이 좋다. ② 통합하는 것이 좋다. ③ 모르겠다.

4. 현재 범죄소년사건은 형사과(수사과)와 소년계(소년반)에서 담당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모든 소년사건은 소년계(소년반)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 ② 현행제도가 좋다.
- ③ 모든 범죄소년사건은 형사과(수사과)에서 담당하고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사건만 소년계에서 담당해야 한다.

5. 성폭력범죄의 상담 및 예방활동을 소년계에서 담당하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동의한다. ② 동의하는 편이다.
- ③ 모르겠다. ④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II. 다음은 소년경찰 인사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6. 현재의 소년계(소년반) 직원수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하다. ② 적절한 편이다.
- ③ 그저 그렇다. ④ 부적절한 편이다.
- ⑤ 매우 부적절하다.

7. 소년경찰을 어떤 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특채모집 ② 공채모집
- ③ 현직 경찰을 전문화교육을 이수한 후 재배치
- ④ 기타()

8. 소년경찰의 전문화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십니까?

- ① 매우 인정한다.
- ② 인정하는 편이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인정하지 않는 편이다. 9번으로 가십시오
- ⑤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8-1. 전문화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교육기관은 어떤 장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외부의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청소년지도자과정 교육
- ② 경찰종합학교 ③ 중앙경찰학교 ④ 경찰수사연수소
- ⑤ 기타()

8-2. 전문화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교육내용은 무엇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심리학 ② 교육학
- ③ 정신의학 ④ 소년비행론
- ⑤ 사회병리학 ⑥ 형사법
- ⑦ 기타()

8-3. 전문화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교육기간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2주 ② 3-4주 ③ 5-6주 ④ 5-8주 ⑤ 9주 이상

Ⅲ. 다음은 소년경찰의 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9. 소년경찰직무규칙의 개정 필요성을 인정하십니까?

- ① 매우 인정한다.
- ② 인정하는 편이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인정하지 않는 편이다.
- ⑤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10. 비행소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① 매우 선도위주로 처리한다.
- ② 선도위주로 처리하는 편이다.
- ③ 모르겠다.
- ④ 선도위주로 처리하지 않는 편이다.
- ⑤ 전혀 선도위주로 처리하지 않는다.

11. 비행소년을 상담할 경우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① 직접 상담한다
- ② 외부의 청소년단체에 상담을 의뢰한다. --- 12번으로 가십시오

11-1. 직접 상담할 경우 어떤 소년을 대상으로 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① 범죄소년 ② 촉법소년
- ③ 우범소년 ④ 불량행위소년
- ⑤ 요보호소년 ⑥ 가출자
- ⑦ 재비행자

11-2. 직접 상담할 경우 상담내용은 무엇입니까?

- ① 이성 및 건강문제 ② 교우관계
- ③ 학교문제 ④ 비행문제

- ⑤ 가정문제 ⑥ 범죄피해
- ⑦ 기타

12. 비행소년의 보호자에 대하여 어떤 내용을 상담하고 있습니까?

- ① 비행문제 ② 가출문제
- ③ 가정문제 ④ 교우관계
- ⑤ 학교문제 ⑥ 성·건강문제
- ⑦ 기타()

13. 가두보도활동은 어느 정도 자주 하고 있습니까?

- ① 수시 ③ 1주일에 1회 정도
- ③ 2주에 1회 정도 ④ 1월에 1회 정도
- ⑤ 3월에 1회 정도 ⑥ 6월에 1회장도

14. 유해업소단속시 가장 많은 위반내용은 무엇입니까?

- ① 미성년자 고용 ② 미성년자 주류제공
- ③ 남녀혼숙 ④ 시간외영업
- ⑤ 불량만화및 음란비디오 상영 ⑥ 도박 및 사행행위
- ⑦ 기타()

15. 유해업소 적발시에 업주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 ① 구속 ② 불구속
- ③ 즉결심판 ④ 행정처분
- ⑤ 훈방 ⑥ 기타()

16. 비행위험성 판정자료는 소년비행의 예측과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 ② 도움이 되는 편이다. 17번으로 가십시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6-1.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예측방법상의 문제 때문에
- ② 예측자료가 현실에 맞지 않아서
- ③ 종합판정법의 기준상 문제 때문에
- ④ 판정에 따른 처우상의 문제때문에
- ⑤ 기타()

17. 촉법소년을 가정법원에 송치할 때 동행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인정하십니까?

- ① 매우 인정한다.
- ② 인정하는 편이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인정하지 않는 편이다
- ⑤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IV. 다음은 소년비행의 예방 및 선도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입니다.

18. 청소년지도위원은 비행소년을 선도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 ①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19번으로 가십시오
- ② 약간 도움을 주고 있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 ⑤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18-1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 ② 경험이 부족해서
- ③ 상담 능력 등 자격상의 문제가 있어서
- ④ 소년과의 세대차이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미흡해서
- ⑤ 경제력이 없어서
- ⑥ 기타()

19. 청소년지도위원은 어느 연령층이 가장 많습니까?

- ① 20대 ② 30대
- ③ 40대 ④ 50대
- ⑤ 60대

20. 청소년지도위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직업은 주로 무엇입니까?

- ① 공무원 ② 대학교수 및 교사
- ③ 청소년단체 회원 ④ 종교인
- ⑤ 지역사회 유지 ⑥ 기타()

21. 청소년 지도위원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소년소녀가장 돕기 ② 불우아동 자매결연
- ③ 가두보도활동 ④ 상담보도활동
- ⑤ 장학금 지급 ⑥ 기타

22. 청소년범죄예방교실은 소년비행의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까?

- ① 매우 효과가 있다. 23번으로 가십시오
- ② 약간 효과가 있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별로 효과가 없다
- ⑤ 전혀 효과가 없다

22-1 효과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 ② 교육기법이 세련되지 못해서
- ③ 학교의 비협조 때문에
- ④ 학생들의 불성실한 수강태도 때문에
- ⑤ 기타()

23. 사랑의 교실은 효과가 있습니까?

- ① 매우 효과가 있다. 24번으로 가십시오
- ② 약간 효과가 있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별로 효과가 없다.
- ⑤ 전혀 효과가 없다.

23-1. 효과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법적 근거가 없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 ② 경찰과 실시기관과의 협조가 부족해서
- ③ 교육프로그램이 빈약해서
- ④ 비행소년 동행 등으로 인한 업무과중 때문에
- ⑤ 기타()

24. 비행소년에 대한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정하십니까?

- ① 매우 인정한다. 24-1, 24-2로 가십시오
- ② 약간 인정한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 24-3으로 가십시오
- ⑤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24-1. 인정한다면 실시기관은 어디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찰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② 청소년단체에 위탁해서 실시해야 한다.
- ③ 다른 국가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 ④ 학교나 직장에서 실시해야 한다.
- ⑤ 기타()

24-2. 인정한다면 주로 어떤 비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모든 비행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 ② 노동을 싫어하는 절도범, 강도범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 ③ 정신적인 이상성격자인 약물사범,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 ④ 기타()

24-3.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 ②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 ③ 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 ④ 법적 근거가 없어서
- ⑤ 기타()

25. 청소년 통행금지제도가 소년비행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약간 도움이 된다.
-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6. 비행소년의 보호자에 대한 자녀교육방식 개선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십니까?

- ① 매우 인정한다. ② 약간 인정한다.

-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⑤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27. 중퇴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정하십니까?

- ① 매우 인정한다. ② 약간 인정한다.
-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⑤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28. 비행소년이 조직범죄집단에 가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① 매우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 ②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편이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특별히 관리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특별히 관리하고 있지 않다.

29. 비행소년의 보호자에 대한 처벌을 인정하십니까?

- ① 매우 인정한다. ② 인정하는 편이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인정하지 않는 편이다. 30번으로 가십시오
- ⑤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29-1. 처벌을 인정한다면 어떤 처벌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육프로그램 수강 조치 ② 즉결심판 회부
- ③ 행정처분 ④ 기타()

V. 다음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항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30. 소년비행을 방지하고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정과의 협조 체제가 갖추어져 있다. 1 2 3 4 5
31. 소년비행을 방지하고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교육청 등)와의 협조체제가 갖추어져 있다. 1 2 3 4 5
32. 소년비행을 방지하고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시,군,구 등)와의 협조체제가 갖추어져 있다. 1 2 3 4 5
33. 소년비행을 방지하고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단체와의 협조체제가 갖추어져 있다. 1 2 3 4 5
34. 소년비행을 방지하고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청소년의 직장과의 협조체제가 갖추어져 있다. 1 2 3 4 5

VI. 다음은 경찰관 개인의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35.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자 ② 여자

36. 귀하는 소년계(소년반)내에서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 ① 수사반 ② 지도반 ③ 구분되어 있지 않다.

37. 귀하의 계급은?

- ① 순경 ② 경장 ③ 경사 ④ 경위 이상

38. 귀하의 연령은?

-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세 이상

39. 귀하의 학력은?

-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전문대학 중퇴 및 졸업
③ 대학교 중퇴 및 졸업 이상 ④ 대학원 중퇴 및 졸업 이상

40. 귀하의 결혼상태는?

- ① 기혼 ② 미혼

41. 귀하가 결혼하였다면 자녀는 몇 명입니까?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42. 귀하가 어린 시절에 성장한 지역은?

- ① 대도시 지역 ② 중소도시 지역 ③ 군 지역 ④ 읍 면 지역

43. 귀하가 소속된 경찰서의 급지는?

- ① 1급지 ② 2급지 ③ 3급지

44. 귀하의 경찰근무경력은?

- ① 5년 미만 ② 5-10년 미만 ③ 10-15년 미만
④ 15-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45. 귀하가 현재의 소년계(소년반)에서 근무한 기간은?

- ① 1년 미만 ② 1년-3년미만 ③ 3년-5년 미만
④ 5년-7년 미만 ⑤ 7년 이상

46. 귀하가 방범(소년경찰)직무교육을 받은 통산기간은?

- ① 받은 적이 없음 ② 3월 미만 ③ 3-6월 미만
④ 6-9월 미만 ⑤ 9월 이상

※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研究報告書 97-06

청소년 비행 통제를 위한 소년경찰 대책

1997年 3月 日 印刷
1997年 3月 日 發行

發行 金 大 圓
編輯 治 安 研 究 所
印刷 大 韓 文 化 社

7'

000526